발간등록번호
11-1332522-000003-10

第 27 輯
ISSN 1738-2971

第二十七輯 治安論叢

2011 Police Science Journal

이주락(경기대학교) 영 · 미 집회 · 시위 관리기법의 검토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박현호(용인대학교) 방범용 CCTV의 사양표준 및 효율적 관리방안
김진태(연세대학교) 교통운영체계선진화사업의 탄소감축 청정개발효과 연구
한상훈(연세대학교) 사법개혁관점에서 바라본 수사효율성 제고 논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이창훈(미국 아칸소대) 민간조사관 활동이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治安政策研究所

발 간 사

우리 경찰에서는 공명정대, 소통·화합, 공감치안을 목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 중심의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고자 여러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친서민 치안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과 원칙 구현을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하여, 경찰 정책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세계최고의 민생치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유일의 연구기관으로서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앞서가는 중장기 치안정책을 연구·개발하여 시의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사법개혁관점에서 바라본 수사효율성 제고 논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등 5편의 논문을 엄선하여 「치안논총」 제27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치안논총」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훌륭한 논문을 완성하여 주신 연구진과 논총발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 8

치안정책연구소장 김영식

총 목 차

◈ 영·미 집회·시위 관리기법의 검토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5

◈ 방범용 CCTV의 사양표준 및 효율적 관리방안 ·····115

◈ 교통운영체계선진화사업의 탄소감축 청정개발효과 연구 ·····213

◈ 사법개혁관점에서 바라본 수사효율성 제고 논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343

◈ 민간조사관 활동이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447

민간조사관 활동이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研 究 陣 》

연 구 위 원 : 이 창 훈 (아칸소대학 범죄/형사정책학과)

목 차

국문요약 ····· 453

제1장 서 론 ····· 458

제2장 이론적 고찰 ····· 460

제1절 민간조사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현황 ····· 460

제2절 선행연구의 한계성 및 본 연구의 필요성 ····· 463

1. 선행연구의 한계성 ····· 463

2. 본 연구의 필요성 ····· 464

제3절 경찰과 민간조사관의 협력관계 ····· 466

1. 치안공동생산론 ····· 466

2. 해외 사례 분석(규제법 vs. 육성법) ····· 470

제3장 시민들의 민간조사에 대한 선호 요인 ····· 477

제1절 시민의 사회인구학적/개인적 특질 ····· 477

1. 사회인구학적 특질 ····· 477

2. 개인적 특질 ····· 478

제2절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 ····· 480

1.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 ····· 480

2. 경찰서비스 만족도 ····· 481

제3절 민간조사관에 대한 시민 태도 ····· 481

1. 수사/정보능력에 대한 인식 ····· 482

2. 도덕성에 대한 인식 ····· 482

3.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 483

제4장 민간조사제도가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 484

제1절 경찰업무의 효율성 ····· 484

제2절 경찰 업무 이양/분담 모델 ····· 486
제3절 실증연구 목표 ····· 488

제5장 연구 방법론 ····· 490
제1절 시민 대상 설문 ····· 490
1. 표집 및 설문 ····· 490
2. 측정 도구 ····· 491
제2절 경찰 대상 설문 ····· 493
1. 인터뷰 ····· 493
2. 표집 및 설문 ····· 494
3. 측정 도구 ····· 495
제3절 분석방법 ····· 498

제6장 연구 결과 ····· 499
제1절 시민 데이터 분석 결과 ····· 499
1. 사회인구학적 특징 ····· 499
2. 서술적 통계 결과 ····· 500
3. 요인분석 결과 ····· 506
4. 상관관계 분석 결과 ····· 509
5.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 511
제2절 경찰 데이터 분석 결과 ····· 514
1. 사회인구학적 특징 ····· 514
2. 서술적 통계 결과 ····· 515
3. 효율성 예측 결과 ····· 520

제7장 결 론 ····· 527
제1절 연구 결과 토론 ····· 527
1. 시민 대상 설문 분석 결과 ····· 527
2. 경찰 대상 설문 분석 결과 ····· 530
제2절 정책 제언 ····· 533

1. 시민의 치안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 ····· 534
2. 경찰활동의 효율성 증대 방안 ····· 535

참 고 문 헌 ····· 540

영 문 요 약 ····· 545

부 록 ····· 548

표 차 례

〈표 1〉 민간조사관의 업무 범위 ····· 488
〈표 2〉 경찰의 수사전단계 업무 ····· 497
〈표 3〉 설문 참가 시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 499
〈표 4〉 시민의 경찰에 대한 태도 ····· 501
〈표 5〉 시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 ····· 502
〈표 6〉 시민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태도 ····· 503
〈표 7〉 시민의 민간조사관 선호 비교 ····· 505
〈표 8〉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 507
〈표 9〉 Scale의 서술적 통계 결과 ····· 508
〈표 10〉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509
〈표 11〉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 512
〈표 12〉 설문 참여 경찰관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 514
〈표 13〉 경찰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태도 ····· 516
〈표 14〉 경찰의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조 경향 ····· 518

〈표 15〉 경찰의 민간조사관과의 실질적 업무 협조 ····· 518
〈표 16〉 업무 협조 형식 ····· 519
〈표 17〉 경찰관 담당 업무건수 ····· 521
〈표 18〉 업무별 월 평균 소비시간 ····· 523
〈표 19〉 민간조사관이 관련된 사건 수 ····· 524
〈표 20〉 민간조사관 협조시 예상 절약 업무시간 ····· 526
〈표 21〉 효율성 예측을 위한 결과 비교 ····· 531

그 림 차 례

〈그림 1〉 이론적 모델 ····· 465
〈그림 2〉 연구 효과 ····· 466
〈그림 3〉 국내 민간조사법의 법리학적 위치 ····· 474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 움직임은 경찰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선되어 지고 있으며, 치안수요 변화와 확대에 부응하여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는 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음성적 활동을 양성화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금껏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민간조사활동 실태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 이전에 경찰이 취해야할 민간조사관활동에 대한 역할모델(통제 및 조정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위상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시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을 실시하여 실증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 이전과 이후의 단계에서 경찰이 취해야 할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네 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법적 배경 소개, 2)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 당위성과 필요성 역설, 3) 민간조사제도의 해외 사례 소개, 4) 민간조사제도의 운용에 대한 실무적 모델 제시 등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은 채 진행되었고, 그 결과 실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내

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민 대상 설문 분석을 통하여 경찰과 민간조사관에 대한 시민 인식을 분석하였고, 시민들의 민간조사 선호 원인을 파악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가 경찰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경찰 대상 설문 분석을 통하여 민간조사관에 대한 경찰의 태도와 업무협조 경향, 민간조사관 활용 시 절약할 수 있는 경찰력을 연구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에 대비 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하였다.

치안공동생산론이라는 이론적 근거 하에, 본 연구는 공공의 치안이 경찰과 민간조사관 공동의 목표이고, 따라서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업무적 협력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의 활동 중 비범죄화가 가능한 민간조사관 활동 분야를 파악하였고 이를 민간조사관에게 이양함으로써,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찰의 위상을 고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 관련 법률들이 크게 규제법과 육성법으로 나뉘며, 미국의 경우는 민간조사활동을 권장하며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본의 경우 민간조사활동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을 비교 분석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법률과 비교하여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관련 법안들이 갖는 성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상의 법률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인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협력에 관한 규정 부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장 시민들의 민간조사에 대한 선호 요인

본 연구는 시민들의 민간조사에 대한 선호 요인으로, 시민의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특질, 사적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 아전인수식 사건처리에 대한 열망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 경찰 서비스 만족도,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 능력에 대한 인식, 민간조사관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민간조사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등도 분석하여,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 되면, 시민들이 민간조사관을 얼마나 선호할 것이며 그 선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설을 정립하였다.

제4장 민간조사제도가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가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크게 경찰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 경찰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업무협력 관계라는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업무 협력 분야를 한국의 민간조사 제도 관련 법안에 입각하여 수사전단계에 국한시켜 실증적으로 얼마만큼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제5장 연구 방법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확률비례추출법을 바탕으로 한 Quota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고, 표본으로 추출된 총 300명의 시민들 중 225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확보하였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과 본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 문항을 취합하고, focus group 활동을 통하여 질문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종속변수는 시민의 민간조사관 고용 의사(즉, 선호도)이며, 독립변수는 앞서 언급한 요인(제 3장 시민들의 민간조사에 대한 선호 요인)들을 포함하였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미국 및 일본의 현직 경찰과의 인터뷰 결과, 선행연구의 설문문항,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문항 등을 포함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국내 현직 경찰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7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표본으로 선발된 400명의 경찰관은 2010년 6월부터 8월 사이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교육원에 참석중인 경찰관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은 경찰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태도,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조, 경찰의 담당 업무량과 소비시간, 그리고 민간조사관 활용 시 예상 절약 시간 등을 포함하였다.

제6장 연구 결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 설문 참여자의 절반정도가 경찰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경찰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의 범죄예방, 해결, 피해자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보였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치안수요에 대한 경찰을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민간조사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경찰보다는 다소 부정적(수사력, 도덕성,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을 처리해 나가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 역시 나타나, 민간조사관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보였다. 특히, 시민들의 민간조사관 선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시민의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 아전인수식 수사에 대한 열망, 수사/정보력에 대한 인식,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경찰에게 기대하는 치안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자의 입장에 치중함으로서 발생하는 치안서비스 불만족이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에 따라 가시적인 치안수요 이동(경찰 -〉 민간조사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는, 대체로 경찰은 민간조사관과의 협력적 업무 관계를 선호하고 있지만, 민간조사관의 자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조직 내 분위기에 의해 많은 실질적인 업무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업무 협력은 문서, 구두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1인당 가장 많은 업무량을 보인 분야는 민사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활동으로 나타났고,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무 분야처리에 있어서 민간조사관을 활용하게 된다면, 경찰 1인 월 평균 대략 17.8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관 1인 평균 업무 부담은 낮지만, 소비시간이 높은 업무 분야로 재산 도피 관계,소재 파악, 고의입증조사, 분실,도난 재산 소재파악 등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민간조사관 협조 및 이양은 경찰력의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민간조사관 활용 시 경찰관 1인 월 평균 8.5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찰 조직 전체로 볼 때 막대한 시간의 절약이라고 하겠다.

제7장 결 론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합법화 이전과 이후 두 단계에 대하여 두 가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합법화 이전단계에서 경찰은 시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찰의 위상을 고양하기위해서, 경찰관의 대시민 서비스 마인드를 고취할 방안과 시민의 치안수요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합법화 이후 단계에서 경찰이 민간조사관 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경찰력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협력 조항 추가와 경찰의 정책적 협력 시행령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민간조사관에 대한 경찰의 태도 변화를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신설과 운용을 제언하였다.

제1장 서 론

최근 국내에서 민간조사관(private investigator)[1]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2].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서서히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선되어 지고 있으며[3], 대중의 치안수요에 부응하여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지고 있다.[4] 이에 따라 근래에는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합법화 움직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5] 민간조사업의 양성화 경향은 그간 대중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 활용성에 대한 인식을 진작시키며,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음성적 업무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6]

이러한 양성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민간조사업(현재의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사업자) 규모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찰백서에서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제시함으로써 음성적 업무에 대한 피해 정도만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상배 의원의 국회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당시인 2006년에 대략 3천개의 심부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7] 정부의 통계 사각지대에서 그 업무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현재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는 불법

---

1)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에 대한 논의는 정웅.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9년. pp. 4~6.; 나영민.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과 대응. 경찰학연구, 7(1), p.201.을 참고하기 바란다. 위의 연구에 따르면, "민간"이라는 용어에는 조사주체가 공공조직과 비교하여 민간인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지고, 업무상 공공적 성격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보다는 민간조사관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보여 진다.

2) 민간조사관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비록 민간경비에 관한 연구는 2000년도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2000년 이후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연구가 17편 이상이 진행된 것으로만 보아도, 근래에 고조되고 있는 대중적 및 학문적 관심을 추정할 수 있다.

3) 정웅. 앞의 논문. p.4.

4) 나영민. 앞의 논문. p.210.

5) 근래에 입안된 법안으로는 하순봉의원의 공인탐정법안(1999년), 이상배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2005년), 최재천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2006년), 강성천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2009년)이 있다.

6) 이상배. 민간조사제도의 정착 및 수사기관관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방지를 중심으로. 2006년 국회 정책연구보고.

7) 이상배. 앞의 보고서.

행위와 각종 범죄와의 연루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8].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음성적 접근이 더욱 용이해지고,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홍보 기능이 용이해 짐으로써, 불법적 업무로 인한 잠재적 피해가능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9]

민간조사업무로 인한 잠재적 피해가능성은 합법화의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도의 도입 당위성이나 필요성, 역사적 혹은 법적 배경,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실용적 정책제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10] 하지만, 애석하게도 경찰의 업무와 가장 많은 관련을 둔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향후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가 경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공권력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로 경찰활동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대안으로 민간조사관제도가 각광을 받게 될 경우, 경찰의 위상과 활동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조사관 활동은 경찰의 공식업무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간조사관 활동이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데이터를 기초로 연구해 봄으로써,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 이전에 경찰이 민간조사관활동의 통제 및 조정을 통하여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민 인식 고양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경찰과 민간조사관에 대한 긍·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민간조사관 선호 원인을 파악하여 대경찰 인식을 고양할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제언을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합법화 이후 민간조사제도의 업무가 경찰활동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8)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5935.html,
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2,
www.gwangnam.co.kr/news/news_view.htm?idxno 등의 보도 자료 참조.

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79686
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205240740571&code=910100 등의 보도 자료 참조.

10) 선행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본론 제2절, 1.선행연구의 한계성)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민간조사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현황

현재까지 민간조사사업 규모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2006년 국회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3천여 개의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등 첨단 미디어를 통하여 홍보와 업무영역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 업무가 진행됨으로써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시민의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11)]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 추세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치안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최근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1)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법적 배경 소개, 2)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 당위성과 필요성 역설, 3) 민간조사제도의 해외 사례 소개, 마지막으로 4) 민간조사제도의 운용에 대한 실무적 모델 제시 등이다.

첫째, 국내에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적 토대를 일구어왔다.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흥신소'라는 용어는 폭력, 불법 행위 등을 통하여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흥신소의 부정적 역할을 내포하고 있었다.[12)] 1970년대 이후에는 흥신소의 부정적 인식을 배제하고 기존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77년 흥신업단속법이 폐지되고 신용조사업법(법

11)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에 대한 현황(규모, 업무범위, 불법행위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은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충분히 언급하고 있고, 구태여 재인용등을 통하여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안동현. 민간조사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7년. 이상배. 앞의 보고서. 황정익.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5년. 등의 연구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나영민. 앞의 논문.

률 제3039호)이 제정됨으로써 민간조사활동이 금지 되게 되었다.[13] 나영민(2007)은 이러한 법제도의 왜곡 현상이 단순히 불법적 행위를 단속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신용조사업을 제외한 모든 민간조사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나타난 시대적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회복되지 않은 법률적 왜곡현상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온 정부의 단속은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비판받게 되었고,[14]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현빈(2006)은 민간조사관 관련 법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인탐정제도를 도입에 대비하자고 주장하였고,[15] 조용철 및 박재풍(2009)은 민간조사제도 관련 법률들을 정리하면서, 한국형 사경찰활동에 대한 법률적 영역 검토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서 민간조사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 또한, 이철호 및 김명대(2008)는 현재의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정웅(2009)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rational choice new institutionalism)를 근거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민간조사관제도의 성과에 집적적인 영향을 줄수 있음을 강조하며, 법/제도의 정비를 촉구하였다.[17]

둘째,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사회적 민간조사 수요를 강조하면서 선행연구들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산업 및 사이버 범죄, 형사고소사건(재산범죄, 친고죄, 의료사고 등), 보험업, 국내범의 해외도피 사건, 미아 등 실종사건 수사 등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강조하면서, 황정익(2005) 및 안동현(2007)은 경찰의 시간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상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18] 김경태(1997)는 수익자부담원칙 확산과 민간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경향을 근거로,[19] 김양현(2007)은 치안공동생산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20] 이상배(2006)는 치안여건변화 및 전문지

13) 나영민. 앞의 논문.
14) 안동현. 앞의 논문.
15) 조현빈,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2006년.
16) 조용철/박재풍. 민간조사업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 2009년.
17) 정웅. 앞의 논문.
18) 안동현. 앞의 논문. 황정익. 앞의 논문.
19) 김경태, 경찰과 민간경비의 비교 분석을 통한 민간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3), 2004년.

식 필요사건의 증가 등을 근거로,[21] 이승철 및 방한복(2007)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과 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을 근거로[22] 경찰활동의 민영화(privatization)와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셋째, 사회적 의식과 법률적 한계성을 인식하고, 제도 합법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토대로, 몇몇 연구들은 해외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황정익(2005)은 현재의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업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한국적 상황을 파악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면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의 민간조사업과 비교를 통하여 한국적 상황에 필요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23] 또, 조용철(2007)은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원 자격증 제도를 연구하고, 정웅(2009)은 미국, 영국, 호주의 민간조사관 자격요건, 면허취득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적 표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시 필요한 실무적 운용 모델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민간조사관 선발, 관리 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선행연구는 치안서비스의 효용성 및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민간조사관과 경찰의 협력관계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김양현(2007)은 치안공동생산이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만, 경찰과 민간조사관들이 치안공동생산을 위해서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4] 특히, 그는 협력적 관계를 위해서는 4C(communication, cooperation, coordination, collaboration)를 활성화해야 하며, 공동목표, 역할설정, 능력과 임무에 대한 지식, 계획된 성과물, 계획표, 교육, 목적, 리더, 동의 협약, 평가 및 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였다. 정일석(2008)은 독일의 예를 들며, 두 주체 사이의 협력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경찰이 범죄예방과 정보수집을 위해 민간조사관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모델을 주장하였다.[25] 이와 유사하게, 안동현(2007)은 민간조사관의 업무를 광범위, 중범위, 최소범위 등의 모델을 바탕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

20) 김양현, 경찰과 민간경비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 2007년.
21) 이상배. 앞의 보고서.
22) 이승철/방한복, 한국경찰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 2007년.
23) 황정익. 앞의 논문.
24) 김양현. 앞의 논문.
25) 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2008년.

한국의 경우 경찰수사에 우선권을 주는 범위 내에서 민간조사관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중범위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제2절 선행연구의 한계성 및 본 연구의 필요성

1. 선행연구의 한계성

국내 민간조사제도 관련 연구들은 그 주제의 다양성과 논의의 질적 깊이에 있어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선행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로, 민간조사제도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시기적 필요에 의한 적절한 논의(예를 들어, 제도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를 폭넓게 진행하였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민간조사제도 실행 시 경찰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찰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26], 그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없어서 그들의 주장은 추론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추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 개발은 그 신뢰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현재까지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두 편이 존재하지만, 두 논문은 민간경비와 관련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최정택(2009)은 민간치안서비스(경비회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대구, 경북지역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는 경비회사에 대한 신뢰성, 지역의 치안체감률 등에 영향을 받는 다는 주장을 하였다.[27] 최무찬(2006)은 경찰 및 민간경비원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28] 위 연구들은 현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실증성[29]은 높이 평가 할 수 있겠다. 아쉽게도, 현

26) 나영민. 앞의 논문. 이상배. 앞의 보고서. 이승철/방한복. 앞의 논문. 안동현. 앞의 논문.
27) 최정택, 경로분석을 통한 민간치안서비스 고객만족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 2009년.
28) 최무찬, 자치경찰시대의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6년.
29) Empiricism, 즉 실증주의적 사회학 연구는 현대 사회과학의 근간이며, 범죄학 및 형사정책학 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재까지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셋째, 실증연구의 부재와 함께,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국적 실정에 부합하는 도입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기초로 한 민간조사관의 역할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조사관의 업무 규제나 범위,[30] 중범위적 역할모델[31] 등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즉, 경찰 업무의 이양에 대한 실제적 데이터가 없고, 민간조사관이 경찰의 업무를 인계하여 수행할 때 예측되는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며, 시민들은 어떤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보다는 민간조사관을 고용하여 처리하려는 경향을 갖는 지에 대한 데이터 등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는 역할모델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2. 본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실증적 데이터를 기초로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에 따라 민간조사관 활동이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측면(즉 경찰의 대민 위상 고양 및 경찰관들의 업무 효율성 확보)에서 연구·분석 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시민 설문 분석을 통하여 경찰과 민간조사관에 대한 시민 인식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민간조사관 선호 원인을 찾아내어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가 경찰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특히, 어떠한 요인들이 시민들이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민간조사관을 고용하게 하는, 혹은 두 치안서비스를 동시에 혼용하여 사용하게 하는 지를 연구하여, 시민들의 경찰 혹은 민간조사관 선호 경향을 비교 연구한다. 이러한 선호 경향 비교연구 결과는 시민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위상을 엿볼 수 있게 하며, 경찰은 위상을 고양할 수 있는 업무들에 치중함과 동시에 민간조사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0) 조용철/박재풍. 앞의 논문.
31) 안동현. 앞의 논문.

〈그림 1〉 이론적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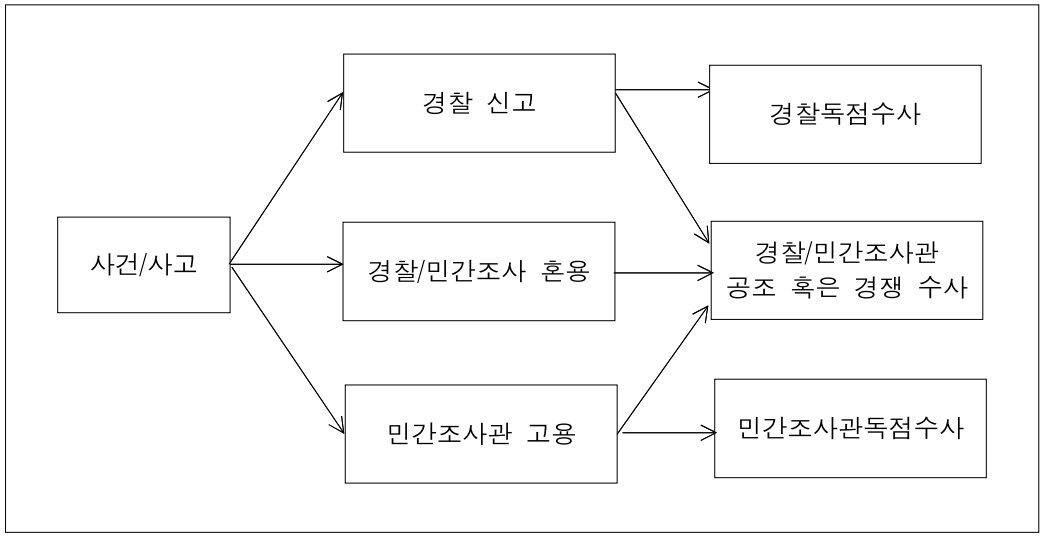

둘째, 본 연구는 경찰 대상 설문을 통하여, 경찰이 민간조사제도에 대해 갖는 태도(attitude), 민간조사관과의 업무협조, 경찰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파악 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민간조사관들의 활동이 경찰활동에 소비되는 업무시간을 얼마나 감소 혹은 증가시킬 것인가를 연구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실정에 부합하는 역할모델을 정책 제언한다. 또한 경찰이 민간조사관과 어떠한 이유에서 업무 협조 혹은 경쟁을 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비범죄화가 가능한 업무를 민간조사관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연구 효과를 〈그림 2〉가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존 경찰업무 중 민간조사관에게 이양 가능한 업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업무 경감과 효율성 증대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갖는 대 경찰 인식을 고양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 연구 분야에서 도출되는 결과는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궁극적으로 경찰의 위상을 재고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림 2〉 연구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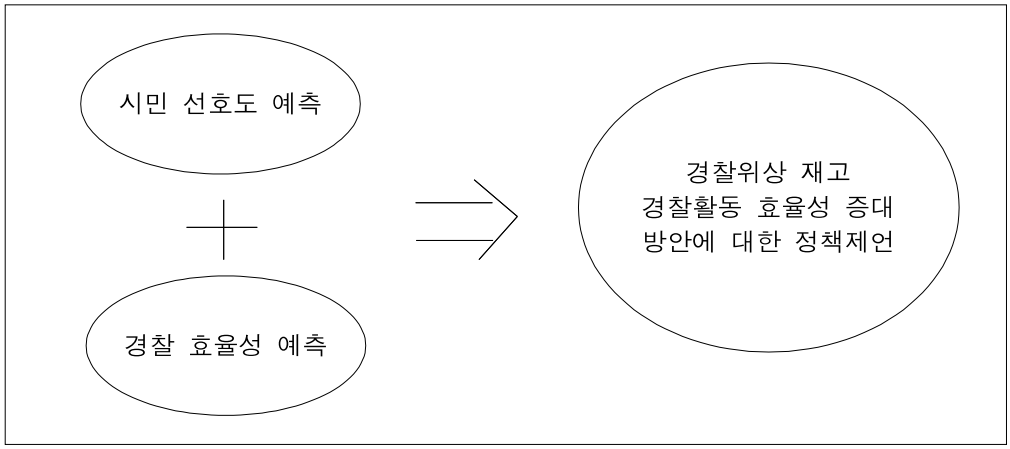

제3절 경찰과 민간조사관의 협력관계

이상의 연구 목표를 위하여 본 절에서는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업무협력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치안공동생산론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해외사례를 분석한다.

1. 치안공동생산론

경찰과 민간경찰(private policing)의 협력에 관한 연구논문은 대표적으로 Rand 연구와 Hallcrest 보고서를 들 수 있다. 1971년 Rand 연구[32]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재원의 희소성과 법률적 구속 때문에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민간조사기구는 경찰서비스의 보조적(supplementary)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33] 특히, 치안공백을 채워주고 고용자(소비자 혹은 시민)에게 개인적 치

32)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산하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NILECJ)에서 발주하여 Rand Corporation에서 실시한 민간조사관에 대한 최초의 전국규모 연구.

안 혜택을 주는 미국의 민간조사기구는 범죄율이나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 등을 크게 감소시켜줄 수 있는 경찰의 중요한 조력자로 간주 되었다.[34] 121개의 경찰서를 설문한 연구[35]와 비교하여, Rand 보고서는 민간조사원들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협조적 관계 유지를 희망하며,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77%의 민간조사원들이 경찰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상호관계는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업무 협조에 중요한 근거가 되며, 특히 권력남용(abuse of authority)이나 개인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행위 단속이 어려운 민간조사관을 적절히 통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쟁(competition) 보다는 협력(cooperation)적 관계를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하였다.[36] 또한 민간조사제도의 주목적은 범죄행위를 예방, 인지, 보고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경호/경비를 제공하며, 사적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예방적 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가 강조하였다.[37]

같은 시기, Scott과 McPherson(1971)은, 미네소타 지역 민간조사관들을 인터뷰 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조사관은 실상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주 지역 경찰들이 갖는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원활한 업무 협조를 이루어 냄으로써 업무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8] 특히,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에 상호사건소개(mutual referral of cases), 상호정보교환(mutual information exchange), 장비대여(민간조사관들이 경찰에게 수사 및 감시장비를 대여해 줌) 등의 가까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치안서비스 제공에 공백을 축소시켜오고 있다고 하였다. Scott과 McPherson(1971)은 이러한 비공식적 협력체제는 법령이나 운영지침 등을 제정하여 공식적 체제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러한 법기반 협력체제는 위기상황시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33) Kakalik, J. S., & Wildhorn, S. (1971). *Private police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Santa Monica, CA: Rand.

34) Kakalik, J. S., & Wildhorn, S. (1972). *Privat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35) Post, Richard S. (1971). Relations with private police services. The Police Chief, March.

36) Kakalik & Wildhorn. 앞의 논문. (1971).

37) Kakalik & Wildhorn. 앞의 논문. (1972).

38) Scott, T. M., & McPherson, M. (1971).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aw and Society Review, 6*, 267-288.

1985년, Rand 연구를 재시행한 Hallcrest 연구도 민간조사관의 역할과 업무는 경찰과 다를 바 없으며, 민간조사관은 조력자(supplementary) 역할에서 더 나아가, 경찰과 업무상 동업자(partner)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9] 특히, Hallcrest 보고서는 민간조사업을 하나의 산업(industry)로 간주하며, 경찰은 이러한 산업분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Hallcrest 보고서는 이러한 민간조사관과의 비협조적 관계는 대체로 경찰의 부정적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경찰이 민간조사관을 업무상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사건수사를 경찰의 고유영역으로 유지하려는 경향(turf war and ownership of investigation) 때문이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Rand 연구와 Scott과 McPherson의 연구, 그리고 이어진 Hallcrest 연구는 모두 당시 미국의 사회상황과 치안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민간조사업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라고 하겠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사회는 극도의 경제위기와 사회혼란을 경험하며, 경찰력의 비효율성과 치안서비스 만족의 급격한 하락 등을 경험하였다.[40] 이러한 변화는 미국 경찰제도에 새로운 시도를 가져오게 했고,[41] 그것을 바탕으로 대두되게 된 하나의 전술이 치안공동생산론이라고 하겠다. 즉, 치안공동생산은 경찰만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주체가 아니라, 시민과 사기업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의 협력을 통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42] Shearing과 Stenning(1983)은 이러한 민간분야(민간경비 및 민간조사업)의 활용은 공권력의 치안망확대(widening net of social control)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43], 법적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경찰의 주도적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민간조사관과의 협력은 치안공백을 제거함과 동시에 나아가 치안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4]

---

39) Cunningham, W. C., & Taylor, T. H. (1985). *The Hallcrest Report: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Portland, OR: Chancellor.

40) Carter, D. L., & Radelet, L. A. (1999).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6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Inc.

41) 이 새로운 시도가 지역중심경찰제(community-oriented policing)이다.

42) 최선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 서울: 대왕사. (2002).

43) Shearing, C. D., & Stenning, P. C. (1983). Private security: Implications for social control. *Social Problems, 30*, 493-506.

44) Shearing, C. D., Stenning, P. C., & Addario, S. M. (1985). Police perceptions of private security. *CAnadian Police College Journal, 9*(2), 127-153.

국내에서는 최선우(2002)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을 주장하였고,[45] 이를 바탕으로 김경태(2004)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라는 목표 하에 민간경비의 확대 및 활용을 강조하였다.[46] 2006년에는 최무찬이 129명의 경찰, 111명의 민간경비원 등을 설문하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원들 사이의 협력이 제한적이며, 정보교환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경찰은 민간경비원들과의 접촉을 꺼려하며, 민간경비원들을 치안서비스(특히 범죄예방)의 공동주체라기 보다는 별개의 집단이며, 민간경비에서 지원하는 정보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47]

2007년에는 김양현이 치안공동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협력적 관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의사소통, 상호조정 및 상호협력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48] 보다 최근에는, 오세연과 유영재(2009)가 경찰의 인력부족은 민간경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경찰은 민간경비와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민간경비 활용 실태를 보고하면서, 제주자치경찰의 출범과 더불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사회/자치경찰 활동 등은 경찰과 민간경비업 사이의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4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의 치안이 경찰과 민간조사관 공동의 목표이고, 경찰의 한계성과 민영화의 경향을 바탕으로 볼 때,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협조관계는 부정적인 효과[50] 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더욱 더 많이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

45) 최선우. 앞의 책. 국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선우는 경찰과 민간분야는 부수적, 경쟁적 혹은 협력적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을 위해서는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6) 김경태. 경찰과 민간경비의 비교 분석을 통한 민간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3), pp. 245-267. (2004).

47) 최무찬. 앞의 논문.

48) 김양현. 앞의 논문.

49) 오세연/유영재.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자치도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 pp. 89-112. (2009).

50) Shearing과 Stenning(1981)에 따르면, 민간조사관이 형사사건수사(criminal investigation)에 관여하게 되면, 경찰의 업무에 부정적 효과(예를 들어, 증거 인멸 혹은 수사 방해 등)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French (1979)는 민간조사업무를 민사사건수사나 범죄예방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방어적(defensive)이며 수동적(passive) 역할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협력적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법률, 정책 등의 제반 환경이 기초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 협력관계는 경찰과 민간조사관이 공동으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1]

2. 해외 사례 분석(규제법 vs. 육성법)

선행연구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공식적 업무 협력 관계 정립은 치안서비스 확대 및 향상의 중요한 변수임은 물론이고,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은 경찰의 위상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본 장에서는 민간조사관과 관련하여 서로 대조되는 법률을 기반으로 상반되는 관계(즉, 경쟁과 협력)를 정립하도록 하고 있는 두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특히, 규제만을 위한 법을 시행한 일본과, 민간조사제도의 육성을 위해 법을 시행한 미국을 대조해 봄으로써, 국내의 민간조사업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가. 일본의 규제법

일본의 탐정업법은 탐정사업의 규제에 중점을 둔 규제법이라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다. 2006년 이전까지 일본에는 탐정사업을 규제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2000년에는 대략 3천여개의 사업체가 존재했고,[52] 탐정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사법 기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실정이었다.[53] 탐정업법의 공표이후 일본에서는 2009년 현재까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French, J. A. (1979).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 Threats or benefit to society? *Police College Magazine, 15*(2), 23-32.; LEAA. (1977). *Law enforcement and private security sources and areas of conflict and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Washington DC: U.S. 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 Shearing, C. D., & Stenning, P. C. (1981). Modern private security: Its growth and implications. *Crime and Justice, 3*, 193-245.

51) Kakalik와 Wildhorn. 앞의 논문. (1971).; Shearing과 Stenning. 앞의 논문. (1983).; Scott과 McPherson. 앞의 논문. (1971).

52) 나영민. 탐정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5).

53) Kunio Suzuki. Ensuring appropriate operations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2010). 스즈키 교수는 현재 일본경찰학교 부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본 연구자와 2010년 6월 17일, 일본경찰청에서 일본 탐정업과 일본경찰과의 관계에 대한 위 토론 자료를 제공하였다.

지 4,953건의 탐정업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2008년 4,439건의 탐정업무와 비교하여 552건이 증가한 것이다. 이중 2009년에는 11명의 탐정이 불법행위로 체포되었으며, 6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스즈키 부교장에 따르면, 정부의 통계 수치에 잡히기 시작한 2007년 이래 탐정업무는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행위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2006년 6월에 공표되고 2007년부터 시행된 탐정업법은 크게, 탐정업의 정의, 자격정지요건, 보고체계, 업무한계, 의무사항, 관리 및 처벌 조항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은 탐정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탐정업무는 특정인의 소재파악 또는 행동에 관한 정보를 탐문, 미행, 잠복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실제조사를 행하여 보고하는 업무를 일컫는다.[54] 일본의 탐정업법은 탐정업무가 범죄수사나 사건처리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없도록 하며, 주로 소행조사, 불륜조사 등의 행동조사와, 기업의뢰에 의한 신용, 채무, 채권, 재판증거, 신원확인, 미아, 행불자 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55] 이러한 탐정업에 대한 협의적 정의는 시민의 자유보장과 규제에 대한 법리논쟁에서 탐정업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자유보장을 최대화 하기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한다.[56]

또한, 탐정업법은 사업자 등록 시 어떠한 자질검증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지역현치안위원회(prefectural public safety commissions: PPSC, 혹은 도도부현공안위원회라고도 칭함[57])에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이후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탐정업자 자질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58] 이러한 규제에 중점을 둔 법리적 근거로 스즈키 교수는 "탐정과의 일체의 접촉이나 업무협조를 꺼려하는 일본 경찰 내부의 조직문화와, 탐정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반영하여, 탐정업자들은 사회의 궂은 일 ("dirty work")을 수행하는 집단으로만 인식하고 있

54) Yasuhiro Hanashi. 일본 탐정업법. (2006). 탐정업법의 구체적 내용은 강영숙.일본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pp.329-357. (2006).을 참고하기 바란다.
55) 강영숙. 앞의 논문.
56) Joji Maki (police superintendent, deputy director of Traffic Planning Division)씨와의 인터뷰에서 마키씨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탐정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정된 탐정업법은 탐정업의 육성보다는 업무범위를 규제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57) 강영숙. 앞의 논문.
58) 나영민. 앞의 논문. (2005). 스즈키. 앞의 토론 자료.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59] 특히, 스즈키 부교장은 일본 경찰 내부에서 탐정과의 접촉 자체를 있을 수 없는 경찰의 부정적 행위로 바라보며, 공공치안은 경찰만이 담당하는 독보적 업무라는 인식은 경찰내부 규정에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일선 경찰들의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는 경찰과 탐정업자들 사이에 어떠한 업무협력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경찰이 탐정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업무상 부담만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나. 미국의 육성법

일본의 규제적 탐정업법과는 정반대로, 미국의 주별 민간조사제도 관련 법률은 민간조사활동을 육성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의 민간조사업법은 민간조사업무 범위를 범죄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의 조사업무를 포함하고 있다.[60] 2008년 캐나다와 미국 내 58개주의 민간조사업법을 조사한 결과에서, O'Connor외 연구자들은 각 주별로 민간조사업법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관리주체(governing-at-a-glance), 특징(character), 자격(identity), 훈련(training), 그리고 정보(information)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주의 민간조사업법은 민간조사업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육성하는 취지를 내포한다고 하였다.[61]

이러한 육성법의 기초는 미국 내 경찰의 민간화 및 민간조사업의 발달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일찍이 시작된 경찰활동의 민영화 경향은 미국 사회에서 개인권익의 보호(self-help 혹은 self-defense)의 방편으로 사회에서 권장 되어 왔다.[62] 기업의 측면에서, Weiss(1986)는 미국 민간조사업 역사를 노동생산시장의 발달과 접목하여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63] 첫째는 식민지 정착단계에서부터 세계 제 1차 대전까지, 둘째는

59) 스즈키. 인터뷰 내용 중.

60) 미국의 민간조사제도 관련 법령 및 현황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폭넓게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관련 법과 현황에 대한 구체적은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하겠다. 플로리다 민간조사업법에 대한 소개는 나영민. 앞의 논문. (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61) O'Connor, D., Lippert, R., Spencer, D., & Smylie, L. (2008). Seeing private security like a state. *Crimonology and Criminal Justice, 8*(2), 203-226.

62) 이는 미국에서 총기 소지 자유화에 대한 논쟁의 근거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적 정의구현에 대한 욕망"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63) Weiss, R. P. (1986). Private detective agencies and labour discipline in the United States,

1차 대전에서부터 1930년대 대 공황기 까지, 셋째는 대공황기 부터 노조가 결성된 시기 까지 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사업체에서 노동력의 규제 및 통제는 전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책임이었고, 이러한 책임 행위를 다 하기 위해 개인경찰관(private police)을 고용하였다. 따라서 이시기의 개인경찰관 고용은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노동력의 통제를 위하여, 세 번째 단계에서는 노조화 된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개인경찰관을 고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개인적 민간조사관 고용 필요 및 욕구는 관련 법령의 취지 또한 민간조사업의 육성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체계화 되고 구체적인 조항들은 사적 치안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유지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64]

다.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 언급한 치안공동생산론과 본 장의 해외사례 비교는 국내에서 민간조사법의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입안되고 있는 법안들은 대개 일본의 규제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민간조사활동을 양성화 하고 합법화하여 시민들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경찰의 치안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육성법의 내용[65]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의 민간조사업법이 규정하는 민간조사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국내 민간조사법의 법리학적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1855-1946. *The Historical Journal, 29*(1), 87-107.

64) Gill, M., & Hart, J. (1997). Private investigators in Britain and America: Perspectives on the impact of popular culture. *Policing, 20*(4), 631.

65) 이철호/김명재. 앞의 논문. 정웅. 앞의 논문. 조용철/박재풍. 앞의 논문. 선행연구는 여러 나라의 민간조사관련 법령들을 정리, 비교하여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민간조사업법의 필요성과 구체적 조항들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최근 입법되는 국내의 민간조사업법은 미국의 관련 법령들과 그 내용상 유사점이 매우 많으며, 이러한 구체적 관리 조항들은 단순히 규제를 부과하는 일본의 법령과는 그 내용상 매우 대조적이며, 육성법안의 성격이 강한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림 3〉 국내 민간조사법의 법리학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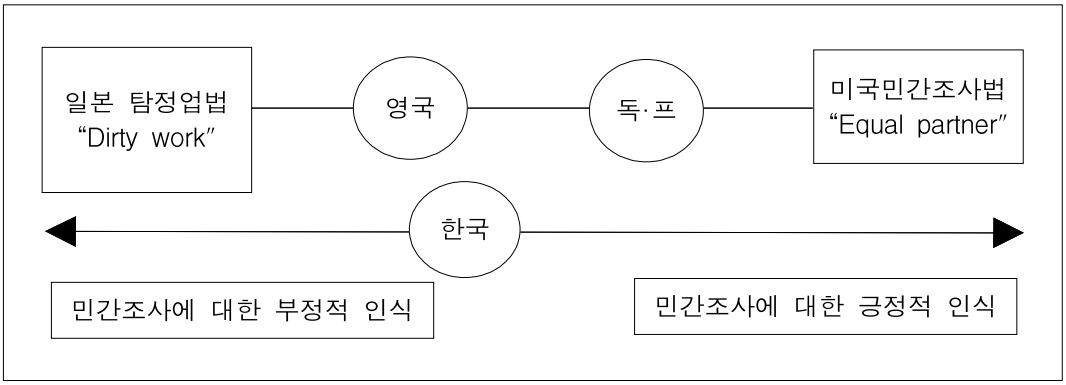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탐정업법은 탐정업을 사회의 궂은 일을 처리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에 근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부정적이며, 이에 따라 경찰의 업무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탐정업을 단순히 행동조사 등을 하는 업종으로 국한한 협의적 정의를 바탕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이와 반하여, 미국의 민간조사업법은 거의 모든 종류의 수사업무를 허가하며, 심지어는 체포 및 영장실행 역시 가능하게 하고 있을 정도이다.[66] 이 두 양극 사이에 존재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민간조사업 관련 법령들은 현재 국내의 민간조사업법의 모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영국의 탐정업에 대한 정의는 행동이나 소재 조사와 재산 등의 멸시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67] 일본 보다는 포괄적이지만, 여전히 매우 제약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유사하게 한국의 민간조사업 관련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다. Gill과 Hart(1997)는 미국과 영국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사회 문화적 뒷받침이 잘 이루어진 미국과는 다르게 영국의 민간조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셜록 홈즈의 배경이 된 빅토리아 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구시대적 시각은 민간조사업자들이 주먹구구식의 행태를 유지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인식을 유지시켰다고 주장하였다.[68] 이는 한국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고 하겠다.[69]

66) 나영민. 앞의 논문. (2005).
67) 나영민. 앞의 논문. (2005).
68) Gill & Hart. 앞의 논문. (1997).

둘째, 독일 및 프랑스의 민간조사업에 대한 정의는 영국과 비교하여서는 좀 더 광의적이고, 미국과 비교하여서는 협의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수사, 체포 등의 폭넓은 권한을 갖는 미국과 비교하여, 독일이나 프랑스의 민간조사법들은 민간조사관에게 미국처럼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기업형 범죄 수사를 폭넓게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국보다는 보다 긍정적이고 양성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비교하여, 수사에 대한 활동을 규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좀 더 부정적임을 감안한다면, 국내의 민간조사업법은 독일, 프랑스와 비교하여서는 좀 더 부정적이며 규제적인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이상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민간조사업 관련 법령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민간조사업법은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협력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여 경찰과의 공식적 협력관계를 통한 치안공동생산이라는 목표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71년에 실시된 Rand 연구에 따르면,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에 분명하게 규정된 협력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70] Scott과 McPherson(1971)은 현재까지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협력에 관한 조항을 갖는 법률이 없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협력 관계가 치안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한다면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71] Shearing과 Stenning(1985) 역시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에 정보교환이 중요한 업무 협조관계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조사관들이 경찰로부터 개인적 정보를 얻기만 하는 일방적(one-way) 협조를 피하고, 경찰이 사건 보고나 정보 획득 등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정책(formal policy)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72]

마찬가지로, 김경태(2004)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을 바탕으로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협력방안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73] 이재경(2009)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민간조사관이 모든 정보를 경찰에 보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74] 박상진(2007)은

69) 나영민. 앞의 논문. (2007).
70) Kakalik와 Wildhorn. 앞의 논문. (1971).
71) Scott과 McPherson. 앞의 논문. (1971).
72) Shearing과 Stenning. 앞의 논문. (1985).
73) 김경태. 앞의 논문.
74) 이재경.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 pp.115-143. (2009).

이러한 민간조사관과 경찰의 업무협조는 법적 행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75], 이러한 법적 행정적 근거는 경찰의 민간조사관의 효율적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선행조건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경찰과 민간조사관의 공식적 협력 방안은 치안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76] 이에 대한 적절한 조항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75) 박상진.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법,제도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 pp.218-307. (2007).

76) Kakalik와 Wildhorn. 앞의 논문. (1971).: Shearing과 Stenning. 앞의 논문. (1983).: Scott과 McPherson. 앞의 논문. (1971).

제3장 시민들의 민간조사에 대한 선호 요인

협력을 전제로 한 경찰과 민간조사관의 관계는 치안서비스의 주체이며 수사업무를 이양 및 분담하며 민간조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경찰에서 민간조사관으로 옮겨질 경우, 공권력 집행에 큰 장애가 됨은 물론 경찰의 위상이 크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시민의 민간조사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시민 의식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경비나 경찰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민의 민간조사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시민의 사회인구학적/개인적 특질이고, 둘째는 시민의 공권력(경찰)에 대한 태도, 셋째는 시민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태도이다.

제1절 시민의 사회인구학적/개인적 특질

현재까지 시민의 사회인구학적/개인적 특질과 민간조사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 서비스 만족도와 시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정립하도록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사적정의(personal justice) 구현에 대한 욕망과 아전인수(self-centered)식 사건 처리에 대한 열망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와 그 영향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

1. 사회인구학적 특질

최정택(2009)의 연구에 따르면, 민간치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구, 경북지역 성인남녀 300명중, 민간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소득 및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자이며 기혼이고 여자일수록 높아진다고 한다.[77] 특히, 차후 민간치안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는 연령, 결혼관계, 소득수준 등과 정적(positive)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자 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경비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 될 경우, 개인적 사건/사고의 처리를 위해서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의사 역시 이러한 변수들과 정적(positive)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2. 개인적 특질

가. 사적정의(personal justice) 구현에 대한 욕망

공공 치안제도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policing) 경향은 실상 최근의 추세는 아니다. Becker(1974)는 민간경찰(private policing)은 자기방어(self-defense)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적법한 자조(self-help)행위라고 하였다.[78] 또한, 비록 이러한 자기방어적 행위는 범죄예방이나 인지, 개인권보호 등의 일을 민간경찰에게 이양하는 행위이지만, 여전히 개인은 자신의 사유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기 때문에, 민간경찰의 고용은 개인이 갖는 책임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9]

따라서 민간조사관의 고용은 개인의 권익과 책임을 보장하는 가용한 자산(asset)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80] Shearing(1992)은 경찰활동은 정부중심 경찰활동(state-centered policing), 자유방임적 경찰활동(laissez-faire), 그리고 다원적 경찰활동(pluralist persepctive)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현재 기존의 정부중심 경찰활동의 틀에서 벗어나 다원적 경찰활동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민영화 과정 가운데 민간조사관은 경찰과 동일한 지위의 협력적 파트너(equal partner)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77) 최정택. 앞의 논문.
78) Becker, T. (1974). The place of private police in society: An area of resaerch for the social sciences. *Social Problems, 21*(3), 438-453.
79) Becker(1974)의 의견은 Rand 연구에서도 인용되어, 민간조사관의 고용은 self-defense 행위의 하나로서, 개인이 갖는 권리이자 자기 책임의 완수를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어 진다.
80) Shearing. 앞의 논문.

고 주장하였다.[81] 이러한 경찰 민영화의 경향은 변화하는 치안환경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82] 특히 개인의 재산범죄의 경우 수사기관 고소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는 국내 실정을 감안한다면, 경찰과 동일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조사관의 필요성은 더욱 중대해 진다고 하겠다.[83] 증가하고 있는 개인권의 보장이나 형사사법정책 내 힘의 불균형 해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면 클수록, 민간조사관의 활용에 대한 선호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민의 사적정의 구현에 대한 열망과 민간조사관 선호도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설을 정립한다.

나. 아전인수(self-centered)식 사건 처리에 대한 열망

Gill과 Hart(1999)는 민간조사제도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 고용자가 민간조사관을 고용함으로써 공식적 적법절차(formal systems of due process)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84] 다시 말하면, 소비자인 시민은 경찰보다 나은 수사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85] 민간조사관을 고용하여, 경찰수사와 병립하여 혹은 경찰수사를 배제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수사결과를 도출하려는 기회를 환영할 것이다. 특히, 공익을 우선시 하는 경찰의 활동은 치안서비스 소비자인 개개인의 욕구를 폭넓게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86]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87] 특히,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형사사법정책에서 피고가 겪는 힘의 불균형(imbalance of

81) Shearing, C. D. (1992). The rel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olicing. *Crime and Justice, 15*, 399-434.
82) 이상배. 앞의 보고서.
83) Gill, M., Hart, J., Livingstone, k., & Stevens, J. (1996). *The crime allocation system: Police investigations into burglary and auto crime*. London: Home Office Police Research Group.; 나영민. 앞의 논문. (2007).
84) Gill, M., & Hart, J. (1999). Enforcing corporate security policy using private investigators.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7*(2), 245-261.
85) Gill, M., Hart, J., & Stevens, J. (1996). Private investigators: Under-researched, under-estimated and under-used? *International Journal of Risk,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1*(4), 305-314.
86) Gill, M., & Hart, J. (1997). Exploring investigative policing: A study of private detectives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7*(4), 549-567.
87) 오세연/유영재. 앞의 논문.

power)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편으로, 민간조사관의 고용은 사건/사고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처리하려는 아전인수식 성향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88] 따라서 본 연구는 아전인수식 사건 처리에 대한 욕망이 강할수록 민간조사 선호도는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다.

제2절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

사회인구학적/개인적 특징과 더불어, 시민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로, 시민의 경찰에 대한 태도(attitude)가 있다. 민간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시민의 대경찰 인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도나 태도가 부정적일 경우, 시민의 민간조사 선호는 다분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긍·부정적 태도, 그리고 경찰서비스 만족도가 민간조사 선호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설을 정립하겠다. 다음에서 각각의 요인과 선호도 사이의 구체적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하겠다.

1.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안타깝게도 민간조사관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하여 시민의 경찰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이 경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면, 경찰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증가한다.[89] 반대로, 시민의 경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면 경찰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적정의 구현이나 범죄 피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적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을 찾기보다는 민간조사관의 고용 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경찰의 수사 한계성(인력, 장비 등의 부족

88) Frank, J. J., & Schwartz, B. M. (1996). Private eyes: Using investigators in criminal defense matters. *Criminal Justice, 11*, 21-28.

89) Stoutland, Sara E. (2001). The multiple dimensions of trust in resident/police relations in Bost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3), 226-256.

및 업무범위의 한계 등)을 더욱 더 잘 인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민간조사관의 고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민간조사관 선호도와 부적(negative)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2. 경찰서비스 만족도

시민의 경찰에 대한 태도 중에서, 경찰업무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90] 역시 민간조사관 고용에 대한 선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조사 활동은 개인의 자율권, 신변보호 및 행복추구 경향의 신장과 더불어 공적 형사사법 서비스의 대안으로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91] 따라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시민의 정의실현에 대한 욕구 충족을 공공 경찰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적경찰 기관의 하나인 민간조사제도를 통해 찾게 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경찰서비스 만족도와 민간조사 선호도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정립한다.

제3절 민간조사관에 대한 시민 태도

시민의 민간경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문헌을 통틀어 단 한편이 존재하고 있고, 시민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인식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Walsh 와 Donovan (1989)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율이 높은 지역 내에서 민간경찰(private police department)을 고용하여 치안서비스를 받는 지역주민들은 낮은 범죄율을 경험하며, 민간경찰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경찰이 가시(可視, visible)적이고 예방(proactive)적이며 지역중심경찰(community-oriented policing) 및 범죄예방순찰('preventive patrolling strategy')에 치중할 때,

90) Skogan, Wesley G. (2005). Citizen satisfaction with police encounters. Police Quarterly, 8(3), 298-321.

91) Swanton, Bruce. (1993). Trends and Issues - Police & Private security: Possible directions.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ustria.

지역주민들의 민간경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92] 위의 연구는 시민들이 갖는 태도가 민간경찰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태도가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는 위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민간조사관에 대한 다음 세 가지 시민 태도를 분석해 보겠다.

1. 수사/정보능력에 대한 인식

Gill과 Hart(1997a)의 연구는 민간조사기관의 규모가 크고 수사/정보능력이 뛰어난 업체일수록 기업의 경제 범죄 수사 의뢰를 많이 받는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93] 이 결과는 시민들이 민간조사관의 수사능력에 대한 인식이 업체 선택에 있어서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Gill과 Hart(1997b)의 또 다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민간조사제도가 발달한 것은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94] Gill, Hart와 Stevens(1996)의 연구는 민간조사관을 고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전문화된 수사 기술과 장비의 보유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95] 국내의 경우, 최정택(2009)은 민간치안서비스 만족도는 민간경호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다고 주장하였다.[96]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간조사관의 수사/조사능력에 대한 긍정적 시민인식은 민간조사관 선호도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정립한다.

2. 도덕성에 대한 인식

Kakalik과 Wildhorn(1971)에 의해 진행된 Rand 연구에서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협력관계는 민간조사관에 대한 경찰의 부정적 인식, 특히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97] 이와 유사하게, Scott과 McPherson(1971)

92) Walsh, W. F. & Donovan, E. J. (1989). Private security and community policing: Evaluation and com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7, 187-197.
93) Gill과 Hart. 앞의 논문. (1997a).
94) Gill, M., & Hart, J. (1997b). Policing as a business: The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private investigation. *Policing and Society, 7*, 117-141.
95) Gill, Hart와 Stevens. 앞의 논문.
96) 최정택. 앞의 논문.

역시 경찰들이 갖고 있는 민간조사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비도덕적이고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민간조사관의 태도에 기인하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협조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저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8]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시민들이 갖고 있는 민간조사관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역시 그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변수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설로 정립한다.

3.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국내에 만연하고 있는 민간조사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하여, 미국과 영국의 민간조사기관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문 민간조사관들이 특정 사건/사고 (특히 유괴, 강간, 미아 사건 등) 등에서는 경찰보다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장한다는 긍정적 인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Gill, Hart와 Stevens(1996)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이 민간조사관을 고용하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confidentiality)나 전문화된 기술과 장비를 꼽았다고 한다.[99]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할 경우, 민간조사관 고용에 대한 선호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7) Kakalik과 Wildhorn. 앞의 논문.
98) Scott과 McPherson. 앞의 논문.
99) Gill, Hart와 Stevens. 앞의 논문.

제4장 민간조사제도가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경찰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경찰이 취할 협력적이며 주도적인 역할모델을 도출할 실증적 근거를 제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활동의 민영화 추세는 근래의 일이 아니며, 민영화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은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업무 이양 및 분담은 경찰의 고유 업무인 형사사건수사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재원(시간과 인력)을 재분배 하여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치안서비스 향상에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100] 비록, 소수의 연구는 민간조사관이 경찰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을 주장하였고,[101]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부분은 민간조사관의 관여가 경찰에게 업무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102] 그 외의 사건(민사사건 등)들은 민간조사관을 활용하여 수사 및 사실확인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민간조사관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제1절 경찰업무의 효율성

경찰의 민간조사제도 활용의 가장 큰 이점은 경찰의 인적·물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경찰 역량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100) 김양현. 앞의 논문.; 안동현. 앞의 논문.; 이상배. 앞의 보고서.; 이승철/방한복. 앞의 논문.; Cunningham과 Taylor. 앞의 논문.; Kakalik과 Wildhorn. 앞의 논문. (1971; 1972).

101) Marling, W. (1995). *The American Roman Noir: Hammet, Cain and Chandler*.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02) French, J. A. (1979).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 Threats or benefit to society? *Police College Magazine, 15*(2), 23-32.; Shearing과 Stenning. 앞의 논문. (1981).

이, 이 같은 경찰활동의 민영화(민간 이양)의 이론적 근거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이 있으며, 실증적 토대를 제시하기 위해 경찰활동과 민간조사관 활동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103] 국내에서 경찰활동의 효율성 증대와 관련하여, 안동현(2007)은 민간조사관 활용은 사건 접수 후 경찰이 내사시간을 절약하여 수사 활동과 중요범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효율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04] 마찬가지로, 이승철/방한복(2007)은 민간조사관 활용은 경찰의 총 업무량을 감소시켜 경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주장하였고,[105] 나영민(2007)은 경찰의 case-load를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치안역량 낭비를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06] 하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효율성 증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다만,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민간조사관제도의 활용이 경찰활동의 효율성 증대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경찰의 치안역량 낭비 감소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수사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치안역량 강화라는 경찰 업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Scott과 McPherson(1971)에 따르면, 민간조사관의 업무는 경찰의 업무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107] 경찰의 업무중 민간이양이 가능한 부분을 민간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인적·물적 자원을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상호사건소개(mutual referral of cases), 상호정보교환(mutual information exchange), 장비대여 등을 통하여 사건정보의 확대 생산을 유도하고, 정보의 중복 생산을 피하며, 수사 장비에 대한 중복 투자 등을 피하도록 하여, 민간조사관과 경찰 모두의 효율적 자원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108]

셋째, 경찰은 전문분야의 수사요원을 양성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필요시 되는 첨

103) Cunningham & Taylor 앞의 논문. (1985).; Kakalick & Wildhorn 앞의 논문. (1971).; Scott & McPherson 앞의 논문. (1971).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104) 안동현. 앞의 논문.
105) 이승철/방한복. 앞의 논문.
106) 나영민. 앞의 논문.
107) Scott & McPherson. 앞의 논문.(1971).
108) Scott & McPherson. 앞의 논문. (1971).

단기술 교육에 지속적인 투자를 피하는 대신 이미 전문화된 민간조사관을 활용함으로써 교육 양성에 필요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의 안전과 공익과는 다소 거리가 먼 전문사건(예를 들어, 보험범죄, 정보산업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전문화된 민간조사관을 활용함으로써 공적 자원인 경찰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109]

넷째, 경찰은 응급 및 위급상황에 민간조사관의 역량을 이용하여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에 진행된 미국의 Rand 연구에 따르면, 홍수나, 대모진압, 태풍, 혹은 화재 등의 상황에서 민간조사관을 경찰의 조력자로 활용('deputize') 함으로써, 치안역량을 분산시키지 않고, 위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110] 예를 들어, 2010년 서울에서 개최 된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동원되는 경찰의 인력을 민간에서 충원한다면, 이 기간 동안 경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제2절 경찰 업무 이양/분담 모델

업무 이양 및 분담과 관련하여, Chaiken과 Chaiken(1987)은 비록 경찰의 민영화에는 반대하지만, 실용적 측면에서 분업(division of labor)은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111] 이에 반해, Scott과 McPherson(1971)은 민간조사관과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민간조사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사실상 동일('virtually identical')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보교환을 통하여 업무협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2] 보다 구체적으로는, 1987년에는 Marx가 5가지의 협력 유형을 제시하였고,[113] 2002년에는

109) 신의기. 보험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2007년), 18(3), 136-1396.: 한상철/정병수. 보험범죄 수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조사와 수사기관의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9년). 14, 297-321.; 황정익. 앞의 논문.

110) Kakalick & Wildhorn. 앞의 논문. (1971).

111) Chaiken, M., & Chaiken, J. (1987). *Public Policing - Privately Provided*.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12) Scott과 McPherson. 앞의 논문.

113) Marx, G. T. (1987). The interweaving of public and private police in undercover work. In C. D. Shearing & P. C. Stenning (Eds.), *Private Policing*. Newbury Park, CA: Sage. 경찰과 민간조

Prenzler와 King이 40명의 민간조사관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업의 4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114] 이상배(2006)는 민간조사관의 수사기관과의 역할관계에 대하여, 민간조사관은 경찰의 피관리감독자로서, 수사보조자로서, 그리고 자치경찰시 업무관계 협조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115] 이상원과 이승철(2007)은 변호사법과 충돌을 우려하여, 민간조사업은 사적영역(개인, 기업관련)으로 제한하여야 하지만, 점진적으로 공적영역(범죄수사, 증거자료 수집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116]

앞서 관련 법률의 비교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발의되고 있는 민간조사업법은 민간조사관의 수사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처럼 만큼 민간조사관의 수사에 대한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민간조사관의 역할은 수사이전 단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 하는 조사 수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민간조사관은 경찰의 조력자(정보 제공 등), 경찰의 피고용 수사보조자(증거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 협조 혹은 업무 이양은 민간조사관에 대한 경찰의 긍정적이며 협조적인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민간조사관과의 경쟁이나 경찰의 비협조는 전적으로 경찰의 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117] 특히, 미국의 경우, 경찰은 민간조사관의 업무상 의도가 금전적 이득에 있기 때문에,[118] 경찰은 민간조사관에게 도움을 주기 보다는 그들로 부터 정보를 얻는 데 치중하며, 경찰은 민간조사관과 좋은 업무상의 협조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약 61%의 경찰), 민간조사관을 열등하게 여기고 있는 것(약 12%의 경찰)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간조사관의 77%는 경찰과 좋은 업무상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에 업무상의 불평등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9] 한국의 경우, 한 연

사관 사이의 다섯 가지 협력 유형은 1) 공조수사, 2) 경찰의 민간조사관 고용, 3) 사기관의 경찰 고용, 4) 경찰과 민간조사관을 통합하는 새로운 조직 구성, 5) 경찰과 민간조사관 간의 인력 교환 등이 있다.

114) Prenzler와 King. 앞의 논문. 민간조사관이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로 1) 사기사건(anti-fraud work), 2) 법률적 보조작업(legal work; 배경조사나 민사/형사사건 변호사를 위한 사실확인 작업), 3) 산업관련 조사, 4) 불륜 등 가족수사 등을 제시하였다.

115) 이상배. 앞의 보고서.

116) 이상원/이승철. 민간조사업 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9), pp.3-30. (2007).

117) Cunningham & Taylor. 앞의 논문.

118) Gill & Hart. 앞의 논문. (1997a).

구에서 경찰의 15%만이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민간경비업자의 8%만이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한국에서도 경찰과 민간경비업자 사이에 업무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120]

제3절 실증연구 목표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는 모두 실증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 않고, 추론을 바탕으로 주장을 제기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현재까지 민간조사관 활용에 따른 경찰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조사업법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으로 경찰이 민간조사관에게 일상적 업무 중 이양이 가능한 부분을 예상하고, 업무 부담의 증감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 되었던 민간조사업법안의 민간조사관 업무범위를 근거로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분류하였다.[121] 다음의 〈표 1〉은 민간조사관의 업무 범위를 보여준다.

〈표 1〉 민간조사관의 업무 범위

사이버범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침해, 기업 회계 부정 등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 훼손 등 각종사고의 원인 및 책임(고의입증 등)의 조사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행방불명자, 미아, 소재 불명 친인척,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의 소재파악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
개인 정보 중 사생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조사 (신원조회 등)

119) Kakalik & Wildhorn. 앞의 논문.
120) 최무찬. 앞의 논문.
1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민간조사업 업무 내용은 근래 발의 되었던 민간조사업법안들(이상배, 최재천, 이인기, 강성천 의원 등의에 의한 대표발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통되는 사항들을 분류하였다.

경찰의 조력자, 수사보조자로서 민간조사관의 업무 범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찰이 이러한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만약 민간조사관의 협조를 얻게 된다면 이러한 업무 수행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분석의 결과는 민간조사제도의 시행에 따른 경찰 역량의 효율적 사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존재하는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업무상 불균형(혹은 민간조사관에 대한 경찰의 부정적 태도)을 놓고 볼 때, 단순한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가 둘 사이의 협무 협조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희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관에게 이양 가능한 업무의 비율과 그 업무가 차지하는 시간을 단순 측정하여 효율성 증가가 가능한 업무에 대한 시간 절감 효과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태도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업무 협조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개선의 여지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

제5장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횡단연구(cross-sectional) 디자인을 바탕으로, 익명성을 전제로 한 자가실행 설문(self-administered survey)을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경찰과 시민 두 집단이었으며, 각 집단별로 다른 설문지를 개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표본 추출법, 설문지 개발 및 설문 시행, 그리고 설문에 포함된 측정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

제1절 시민 대상 설문

1. 표집 및 설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와 그에 따른 민간조사관활동이 시민들의 경찰서비스 및 민간조사관 서비스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하여 민간조사관 활동의 양성화와 뒤따르는 경찰에 대한 위상 변화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를 제공한(sample element) 시민은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을 바탕으로 Quota sampling을 통하여 추출 되었다.[122] 즉, 서울 및 수도권(경기 및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구대비 140명(서울), 80명(인천), 80명(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을 각 지역에서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15명의 연구보조원을 선발, 설문의 취지와 익명성(anonymity), 자발성(voluntarism)에 대한 주

122) Probability sampling방법이 바람직하겠지만, 본 연구의 제한된 기간과 resources로 인하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고, 결과적으로 확률표본의 수집은 불가능하였다. 대신, 지역별 차별성과 인구밀집도 등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표본 추출에 있어서 정확도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음을 밝혀둔다.

의사항을 교육하였다. 2010년 7월부터 8월 사이, 연구보조원들은 해당지역에 나가서 표본으로 추출된 시민들의 만나 설문의 취지와 익명성, 자발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의 설문 참여 의사에 따라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설문이 진행된 후 응답자에게 소정의 답례(1만원 상당의 물품)를 제공하고, 회수된 설문지를 서울 소재 한 대학 연구실로 운송, 데이터 입력(coding) 작업을 실시하였다.[123] 설문 응답자는 서울 106명, 인천 60명,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59명으로 총 225명이였고, 시민 설문 응답률은 최종 75%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시민을 대상을 한 설문은 구미지역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성향, 경찰과 관련한 경험, 거주지역의 특징, 경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 되었다.[124] 특히 선행연구에 사용되었던 문항 중, 한국과 상이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제외 혹은 수정되었다. 설문지 초안이 완성된 후, 본 연구자는 2010년 6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focus group을 모집, 시민 대상 설문을 사전 실시(field test)하여 질문지에 대한 정확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등을 점검하였다. focus group을 통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문항을 수정하였다.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는 시민의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의사(즉, 선호도)이며, 12개의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시민의 민간조사관 선호도에 대한 문항은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되었다. 민간조사 선호도는 "만약 귀하께서 아래의 사건/사고에 연루 되었을 때, 민간조사관을 고용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Likert scale(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형태의 응답을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되었다. 해당 사건/

123) 설문 진행과 데이터 코딩 등을 진행해 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허준 씨에게 본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12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민간조사관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문 문항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구미지역에 발표된 선행연구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들에서 설문문항을 추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사고의 유형은, 1) 뺑소니 사고 피해 발생시, 2)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 발생시, 3) 회사나 가게 등 자영업장 내 범죄문제 발생시, 4) 자동차나 귀중품 등 분실 피해 발생시, 5) 사기 등 피해를 당했을 때, 6)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7) 미술품, 도자기 등 예술 작품을 도난당했을 때, 8) 가족 등 친인척이나 친구가 실종되었을 때, 9) 신입사원 채용시, 10) 결혼이나 계약 등을 위해 신원조사가 필요할 때, 11) 불륜 문제 발생시, 그리고 12) 사생활 침해를 당했을 때를 포함하였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 즉 시민의 민간조사관 선호에 대한 요인들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시민의 사회인구학적/개인적 특질, 2)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 그리고 3) 민간조사관에 대한 시민 태도.

사회인구학적 특질은 나이, 성별, 학력, 결혼관계, 소득수준 등을 포함하였다. 개인적 특질로는 사적정의(personal justice) 구현에 대한 욕망과 아전인수(self-centered)식 사건 처리에 대한 열망이 측정되었다.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열망은 '민간조사관제도는 개인적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아전인수(self-centered)식 사건 처리에 대한 열망은 '민간조사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해 줄 것이다,' '민간조사원은 경찰보다 내 의사를 존중할 것이다,' '민간조사원은 나를 위해 일 할 것이다' 등으로 측정 되었다. 이상의 질문들은 5-point Likert scale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을 이용하였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경찰서비스 만족도로 구성되는데,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8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1)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친절하다, 2)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공정하다, 3)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정직하다, 4)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시민을 잘 보호해 준다, 5)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범죄를 잘 해결한다, 6)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범죄를 잘 예방한다, 7)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시민의 만족에 민감하다, 8)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한다. 경찰서비스 만족도 역시 8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1) 나는 전반적으로 경찰활동에 만족한다, 2) 나는 경찰의 지역사회문제 해결 노력에 만족한다, 3) 나

는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경찰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경찰의 범죄피해 대처에 만족한다, 6) 나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만족한다, 7) 나는 경찰의 범인 검거(범죄해결) 능력에 만족한다, 8) 나는 경찰의 현 치안서비스에 만족한다. 이상의 질문들은 5-point Likert scale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을 이용하였다.

민간조사관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 능력, 도덕성,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민의 인식에 대해 측정되었다. 수사/정보 능력은 '민간조사원은 경찰보다 수사력이 뛰어날 것이다,'와 '민간조사원은 경찰보다 정보력이 뛰어날 것이다'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민간조사관의 도덕성에 관한 인식은 '민간조사원은 경찰보다 도덕적이고 깨끗할 것이다'라는 문항으로, 민간조사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은 '민간조사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질문들 역시 5-point Likert scale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을 이용하였다.

제2절 경찰 대상 설문

1. 인터뷰

민간조사관 활동이 경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보다 실질적인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서, 민간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법적·제도적 접근이 대조적인 미국과 일본의 경찰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목적은 첫째,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협력 관계에 대해 관찰하고, 둘째, 업무 분담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는 것이었다.[125] 미국 내 인터뷰는 2010년 6월부터 8월 사이, 인터넷 이매일과 대면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일본 내 인터뷰는 2010년 6월 17일과 18일 사이, 일본 경찰청 Joji Maki 경정과 일본 경찰학교 부교장 Kunio Suzuki 경정과 도쿄 소재 일본 경찰청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경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분석하여 민간조사관의 용역을 이용

125) 인터뷰 결과는 이론적 고찰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류하기 위해, 한국 경찰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126] 특히,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 이후에도 규제법과 육성법의 중도적 입장을 취하며, 경찰의 수사 업무를 민영화하지 않을 국내 법안을 근거로, 민간조사업무 중 수사 전단계 업무 내용을 분류해 내는데 인터뷰의 초점이 맞추어 졌으며, 경찰의 수사 전단계 업무 내용은 본 장의 측정도구 섹션에 제시되어 있다.

2. 표집 및 설문

경찰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경찰이 민간조사관에 대해 갖는 태도와 업무협조 정도, 그리고 민간조사활동을 합법화함에 따라 경찰의 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선 경찰관들 중에서 민간조사관과의 업무상 접촉이 빈번 할 것으로 보이는 직책과 보직에 있는 경찰관들을 표본으로 추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찰 설문을 위해서 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년 6월 25일, 본 연구자는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과정 연수생 7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field test)을 실시하여,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과 서울경찰청 현직 경찰관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한 수사전단계 업무(즉, 경찰업무 중 민간조사관이 대체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업무)에 소비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127]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경찰 설문지를 재작하였고,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교육원 참여 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여 원생들 중, 특히 수사 전단계 업무 수행에 집중 할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들, 즉 수사/형사 조사과정, 강력계 추적과정, 경제(회계부정)과정, 성폭력 과정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선발한 연구보조원을 대상으로 설문의 취지와 익명성(anonymity), 자발

126) 본 연구에 사용 된 수사전단계 업무 내용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나영민 경정과 수사과 한상훈 경감, 그리고 서대문경찰서 강력계장 이성일 님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분류하였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구체적 내용은 본 장의 측정도구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127)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을 가능하도록 협조해 준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실장 오지형 경정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성(voluntarism)에 대한 주지사항을 교육하였다. 2010년 6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연구보조원은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교육원을 방문하여, 사전 선정된 교육과정 참여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위의 익명성과 자발성에 대해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설문이 진행된 후 회수된 설문지를 서울 소재 한 대학 연구실로 운송, 데이터 입력(coding) 작업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377명으로, 최종 응답률은 94.3%로 나타났다.

3. 측정 도구

가. 경찰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태도

민간조사관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총 1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경험에 비춰보면 앞으로 시행될 민간조사관 활동은 내 업무(경찰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민간조사관 활동은 치안서비스(범죄예방) 공백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민간조사관들은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4) '민간조사관 활동은 경찰의 범죄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민간조사관은 소비자(의뢰자)의 이득보다 자신의 이득을 목표로 한다,' 6) '민간조사관들은 경찰에 비해 자질이 부족할 것이다,' 7) '경찰활동에 있어서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내 업무량을 늘이기만 할 것이다,' 8) '나는 가급적이면 민간조사관들과의 접촉이나 업무 협조를 피하려 한다,' 9) '민간조사관들은 경찰보다 나은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도 있다,' 10) '민간조사관은 수사능력이 부족하다,' 11) '민간조사관들은 경찰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려 한다.' 이상의 질문들은 5-point Likert scale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을 이용하였다.

나. 경찰의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조

경찰과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조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측정되었다. 첫째는, 경찰의 업무 협조 경향이고 둘째는, 경찰의 실질적 업무 협조 경험이다. 경찰의 업무 협조 경향은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사용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은

민간조사관들과 협력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2) '나는 일반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민간조사관의 요청이 있을시 업무상 협조를 할 것이다,' 3) '민간조사관들과 업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필요시 민간조사관들과 수사 경쟁을 하기보다는 정보공유를 통한 공조수사를 할 것이다,' 5) '상사들은 민간조사관과의 수사 협조를 싫어한다.' 이상의 질문들 역시 5-point Likert scale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을 이용하였다.

경찰의 실질적 협조 경험은 〈표 1〉에 제시된 사건의 유형이나 사건의 종류를 바탕으로 협조형식 (문서, 구두), 협조 빈도 등을 질문하였다. 협조 빈도는 Likert scale 타입으로, 협조안함, 월 1-4회, 월 5-10회, 월 11-20회, 거의 매일 등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물론, 현재 민간조사관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 등의 업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음성적으로 경찰과 접촉/협조한 경험을 질문하였다.

다. 민간조사관에 이양/분담 가능한 경찰 업무

민간조사관에 이양할 수 있는 경찰활동은 크게 수사전단계 업무와 수사단계 업무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합법화의 방향은 경찰의 수사업무를 이양하지 않고 민간조사관을 경찰의 조력자 역할에 국한시키고 있는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합법화 이후 민간조사관에게 이양/분담 가능한 경찰의 업무는 수사전단계업무로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사전단계 업무는 13개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및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인터뷰와 기초 설문을 실시하여, 수사전단계 업무 분류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수사전단계 업무는 〈표 2〉에 제시되고 있다.

〈표 2〉 경찰의 수사전단계 업무

민사사건(고소 등)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자료 수집 활동 (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 훼손 등 각종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행방불명자, 미아, 소재 불명친인척,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활동
재산 도피 관계 및 소재 확인 활동
고의입증 조사 활동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활동
가출인 정보 확인 활동
탐문조사활동(정보수집, 정리, 확인)
기존 실종자 정보(미해결 실종자 사건) 조사 활동
신원 확인 활동
행적/주소지 파악 등의 활동
여타 기관(공공/사립 등) 확인활동
CCTV 등 확인활동
불륜 등 사건 조사 활동

표에 제시된 수사전단계의 경찰업무는 일선 경찰들이 하루 중 수행하는 업무 중 실제로 민간조사관들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 부분을 선별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위의 경찰업무는 구체적 사건의 유형이나 사고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한 것이 아니라,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 될 경우, 경찰이 민간조사관을 활용하여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분류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이버 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의 고유 업무 중 일부(특히, 체포나 구금, 심문 등)는 민간조사관이 대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업법이 민간조사관들의 사이버범죄 수사를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업무는 경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분류를 바탕으로, 13개의 문항이 구성되었고, 각 문항에 대해 담당 사건 수, 월평균 소비시간, 민간조사관이 관련된 사건 수, 그리고 민간조사관의 협조 시 예상되는 업무 절약 시간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마지막 14번 문항은 위에 지시되지 않은 업무분야가 있을 경우 직접 기재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사건 수, 소비 시간, 예상 절약 시간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제3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계에서는 시민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경찰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다. 시민 설문 데이터 분석은 다시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통하여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관분석(correlations)을 통하여 종속변수(민간조사 선호)와 독립변수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와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을 통하여 구성한 요인(factors)들을 사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민간조사 선호도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민간조사를 선호하는지 경찰서비스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에 따른 경찰의 위상 고양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도록 한다.

경찰 설문 데이터 분석 역시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첫째 단계에서는 경찰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기술통계를 통하여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통계를 통하여 경찰이 민간조사관에 대해 갖는 태도와 업무협조 경향, 업무협조 실태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민간조사관 활용을 통하여 경찰이 경감해 나갈 수 있는 업무량을 분석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에 따른 경찰활동의 예상되는 효율성 제고 정도와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제언을 하도록 한다.

제6장 연구 결과

제1절 시민 데이터 분석 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징

다음의 〈표 3〉은 설문 참가 시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설문 참가자 총 225명 중, 남자는 116명으로 약 52%를, 여자는 109명으로 약 48%를 차지하였다. 평균나이는 35세이었고, 최연소 참가자는 19세, 최고령 참가자는 85세이었다. 설문 참가자의 절반가량이 미혼이었으며 (약 54%), 1명의 이혼자와 2명의 사별 경험을 가진 참가자가 있었다.

설문 참가자의 대부분이 4년제 대학교 혹은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124명이 대학교 졸업(약 56%), 25명이 대학원이상(약 11%)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으며, 중학교만을 졸업한 참가자가 4명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참가자의 약 40% 정도(88명)가 미취업 상태(학생, 주부, 의무복무 군인, 실업자,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등)로 나타났으며, 생산직 종사자는 1명, 그 밖에 다양한 직업 분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전문기술직 이상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52명 (약 23%)로 나타났다. 설문 참가자의 평균 수입은 41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월 1500만원의 수입을 얻는 참가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설문 참가 시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n	%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116	51.6		
	여자	109	48.4		
나이		Min=19	Max=85	35.1	13.1
결혼관계	미혼	120	54.1		
	기혼	99	44.6		

	이혼	1	.5		
	사별	2	.9		
학력	중학교 졸업	4	1.8		
	고등학교 졸업	38	17.2		
	단과대 졸업	30	13.6		
	대학교 졸업	124	56.1		
	대학원 이상	25	11.3		
직업	미취업	88	39.6		
	생산직	1	.5		
	서비스직	15	6.8		
	판매직	32	14.4		
	사무직	34	15.3		
	반전문기술직	34	15.3		
	관리직	6	2.7		
	전문직	12	5.4		
월수입		Min=0	Max=1500	410.5	232.9

2. 서술적 통계 결과

다음의 〈표 4〉는 설문에 참여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보여준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100명의 참가자들(44.7%)이 경찰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단지 25명(11.1%)만이 경찰활동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여, 설문참여자 대부분이 경찰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대범죄 활동에 대한 태도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나, 52명(23.1%)만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경찰이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약 60%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39명(약 17.3%)만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경찰의 범죄대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역 경찰의 범죄 해결과 예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에는 각각 15.1%, 17.4%가 긍정적인, 23.6%, 25%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보면, 시민들의 구체적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4〉 시민의 경찰에 대한 태도

	매우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반대
경찰활동에 대한 관심	36 (16.1%)	64 (28.6%)	99 (44.2%)	18 (8.0%)	7 (3.1%)
범죄에 대한 적절대응	3 (1.3%)	49 (21.8%)	134 (59.6%)	32 (14.2%)	7 (3.1%)
범죄 해결	7 (3.1%)	27 (12.0%)	138 (61.3%)	44 (19.6%)	9 (4.0%)
범죄 예방	10 (4.5%)	29 (12.9%)	129 (57.6%)	49 (21.9%)	7 (3.1%)
주민과 유기적 관계	5 (2.2%)	42 (18.7%)	135 (60.0%)	36 (16.0%)	7 (3.1%)
시민의 적절한 보호	11 (4.9%)	44 (19.6%)	139 (61.8%)	26 (11.6%)	5 (2.2%)
경찰서비스에 노력	7 (3.1%)	36 (16.0%)	128 (56.9%)	42 (18.7%)	12 (5.3%)

지역 주민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유지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였고 (약 21% 긍정적, 약 19% 부정적), 경찰이 지역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24.5%가 긍정적, 13.8%가 부정적 태도를 보여, 보편적으로 경찰의 시민 보호 측면은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이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19.1%가 긍정적으로, 24%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에는 노력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치안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5〉는 시민들이 느끼는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 경찰활동과 경찰업무 수행, 효과적 경찰활동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시민들의 24.4%, 25.4%, 22.2%가 긍정적인 응답을, 19.1%, 17.4%, 19.1%가 부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대체로 경찰의 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질문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만족, 범죄자의 검거 등 범죄 해결 능력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는 27.2%, 26.3%, 28.6%의 시민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서, 긍정적 응답자(14.3%, 18.3%, 14.7%)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경찰의 주요 업무인 범죄 예방, 해결, 피해자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활동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경찰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도 19.6%가 긍정적인 태도를, 20%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경찰의 현 치안서비스에 대한 인식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나(29.8%가 부정적, 18.3%가 긍정적인 태도 견지), 시민들의 전반적인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시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

	매우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반대
전반적 경찰활동	9 (4.0%)	46 (20.4%)	127 (56.4%)	34 (15.1%)	9 (4.0%)
업무의 적절한 수행	9 (4.0%)	48 (21.4%)	128 (57.1%)	33 (14.7%)	6 (2.7%)
효과적 경찰활동	7 (3.1%)	43 (19.1%)	132 (58.7%)	37 (16.4%)	6 (2.7%)
범죄피해 대처	6 (2.7%)	26 (11.6%)	132 (58.7%)	53 (23.6%)	8 (3.6%)
범죄예방 활동	7 (3.1%)	34 (15.2%)	124 (55.4%)	48 (21.4%)	11 (4.9%)
범인검거 능력	7 (3.1%)	26 (11.6%)	127 (56.7%)	51 (22.8%)	13 (5.8%)
지역사회문제해결노력	8 (3.6%)	36 (16.0%)	136 (60.4%)	39 (17.3%)	6 (2.7%)
현 치안서비스	8 (3.6%)	33 (14.7%)	117 (52.0%)	54 (24.0%)	13 (5.8%)

다음의 〈표 6〉은 시민들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25명의 설문응답자중, 12명이 민간조사관(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을 고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2명이 만족스럽게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민간조사에 대한 태도로, 시민들의 31.6%가 민간조사관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사/수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무려 42.3%가 민간조사관은 의뢰자의 의사를 존중 할 것이고, 43.1%가 의뢰인을 위해 조사 활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민간조사관들은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할 것이며 (54%), 의뢰인이 예상하고 있는 사건의 결말을 도출시켜 줄 것이라(22.8%)는 기대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시민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태도

	매우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반대
고용한 경험 있음	5 (2.2%)	7 (3.1%)	27 (12.0%)	57 (25.3%)	129 (57.3%)
만족스럽게 이용 경험	3 (1.3%)	9 (4.0%)	39 (17.3%)	49 (21.8%)	123 (54.7%)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	17 (7.6%)	54 (24.0%)	98 (43.6%)	45 (20.0%)	11 (4.9%)
내 의사를 존중	24 (10.7%)	71 (31.6%)	89 (39.6%)	29 (12.9%)	12 (5.3%)
나를 위해 조사/활동	24 (10.7%)	73 (32.4%)	96 (42.7%)	24 (10.7%)	8 (3.6%)
고용인 서비스 집중	28 (12.5%)	93 (41.5%)	84 (37.5%)	15 (6.7%)	4 (1.8%)
예상된 결과 도출	11 (4.9%)	40 (17.9%)	131 (58.5%)	27 (12.1%)	15 (6.7%)
개인적 정의 실현	11 (4.9%)	37 (16.4%)	122 (54.2%)	36 (16.0%)	19 (8.4%)
경찰보다 뛰어난 수사	11 (4.9%)	47 (20.9%)	107 (47.6%)	50 (22.2%)	10 (4.4%)
경찰보다 뛰어난 정보	15 (6.7%)	51 (22.8%)	94 (42.0%)	57 (25.4%)	7 (3.1%)
도덕적 임	9 (4.0%)	32 (14.3%)	112 (50.0%)	52 (23.2%)	19 (8.5%)
개인정보 보호	10 (4.5%)	44 (19.8%)	99 (44.6%)	53 (23.9%)	16 (7.2%)
경찰을 더 선호한다	8 (3.6%)	61 (27.1%)	106 (47.1%)	42 (18.7%)	8 (3.6%)
민간조사 합법화	20 (8.9%)	53 (23.6%)	107 (47.6%)	35 (15.6%)	10 (4.4%)

이러한 민간조사관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시민들의 입장과 비교하여, 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질문에는 다소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는데, 21.3%의 시민만이 민간조사제도는 개인적 정의를 실현하게 해 줄 것이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31.1%는 그렇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이는 민간조사제도가 개인적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개인적 정의 구현 측면에는 다소 부정적 시간을 보여, 사건/사고에 대한 사적 해결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꼭 정의 구현과 일맥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경찰과 비교하여, 민간조사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시민들은 다소 상이한 의견을 보였다. 민간조사관이 경찰보다 뛰어난 수사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25.8%가 그렇다, 26.6%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고, 민간조사관이 경찰보다 뛰어난 정보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29.5%가 긍정적인, 28.5%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즉, 시민들은 민간조사관들이 정보력에 있어서는 경찰보다 앞설 수 있겠지만, 수사능력에 있어서는 공권력을 가진 경찰력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과 비교하여 시민들은 민간조사관들이 다소 도덕성이 부족할 것이며 (31.7%가 부정적), 개인정보 보호에도 취약할 것이라고(31.1%가 부정적)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선호태도에 대해서, 시민들은 30.7%가 민간조사관에게 사건의 의뢰하기 보다는 경찰에게 신고하는 쪽을 선택하였고 (22.3%가 민간조사관을 더 선호함),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32.5%가 긍정적으로, 20%가 부정적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되기를 더 희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조사관에 대한 수사/조사 의뢰는 단순 민간조사관 선호와는 별개로 여러 변수들에 의해 좌우 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다음의 〈표 7〉은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이 아래의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 민간조사관, 변호사 중 누구에게 사건을 신고 혹은 의뢰 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중복 선택 가능).

〈표 7〉 시민의 민간조사관 선호 비교

	경 찰	민간조사관	변호사
뺑소니 사고 피해 발생시	182 (80.9%)	50 (22.2%)	26 (11.6%)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 발생시	88 (39.1%)	52 (23.1%)	113 (50.2%)
회사/가게 등 자영업장내 범죄 발생시	169 (75.1%)	44 (19.6%)	27 (12.0%)
자동차나 귀중품 등 분실 피해 시	182 (80.9%)	49 (21.8%)	14 (6.2%)
사기 등 피해 시	140 (62.2%)	61 (27.1%)	58 (25.8%)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104 (46.2%)	41 (18.2%)	107 (47.6%)
미술품, 도자기 등 예술 작품 도난 시	161 (71.6%)	72 (32.0%)	17 (7.6%)
가족/인척/친구 실종 시	150 (66.7%)	118 (52.4%)	19 (8.4%)
신입사원 채용 시	84 (37.3%)	113 (50.2%)	26 (11.6%)
결혼/계약 등을 위한 신원조회 시	69 (30.7%)	126 (56.0%)	34 (15.1%)
불륜 문제 발생 시	68 (30.2%)	121 (53.8%)	56 (24.9%)
사생활 침해등 피해 시	97 (43.1%)	84 (37.3%)	73 (32.4%)

뺑소니 사고 피해 발생시, 시민들의 80.9%가 경찰에게 신고할 것이며, 대략 22%만이 민간조사관을 고용하여 사건을 해결할 의사를 보였다. 또 회사나 가게 등 자영업장내에서 범죄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경찰 신고가 가장 높게(75.1%)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자동차나 귀중품 등 분실 피해 발생 시나 미술품, 도자기 등 예술 작품 도난 피해 발생 시 등에도 나타나(각각 80.9%, 71.6%), 전통적으로 경찰의 업무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 발생 시에는 공권력을 지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 침해 피해 발생 시, 명예훼손을 당했을 시에는 변호사 고용이 가장 많은 응답률(각각 50.2%, 47.6%)를 보여, 법적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사건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이와 비교하여, 민간조사관 선호가 강하게 나타난 사건/사고로는 가족 등 친인척이나 친구가 실종 되었을 경우(52.4%), 신입사원 채용 시(50.2%), 결혼이나 계약 등을 위해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56.0%), 불륜 문제 발생 시(53.8%) 등, 전형적인 민간조사업무(지금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업무)로 여겨지는 경우로 국한되어 나타났다. 또한 사기 등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 신고가 62.2%, 민간조사관 고용이 27.1%로 나타나, 공권력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개인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조사관을 고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여, 민사사건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와 민간조사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보여주었다.

3. 요인분석 결과

다음의 〈표 8〉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인 민간조사관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들 중 요인분석(factor analyses)을 실시한 변수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변수들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실시 후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하여 최초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시민들의 민간조사관 선호도가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두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첫 번째 종속변수는 전통적인 경찰업무에 해당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간조사관 선호도에 해당하고, 두 번째 종속변수는 전형적인 민간조사 업무에 해당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간조사관 선호도에 해당된다.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이 다시 실행되었고, 각 문항들의 요인 적재량(loading)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종속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Cronbach's alpha)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각각 α=.92 & .84).

독립변수들 중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이 실시된 변수는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 경찰서비스 만족도,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에 대한 인식 등이다.

〈표 8〉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Loading	α
종속변수 1: 전통적인 경찰업무		
뺑소니 사고 피해 발생시	.79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 발생시	.85	
회사나 가게 등 자영업장 내 범죄문제 발생시	.85	
자동차나 귀중품 등 분실 피해 발생시	.83	.92
사기 등 피해를 당했을 때	.85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78	
미술품, 도자기 등 예술 작품을 도난당했을 때	.80	
가족 등 친인척이나 친구가 실종되었을 때	.70	
종속변수 2: 전형적인 민간조사 업무		
신입사원 채용 시	.77	
결혼이나 계약 등을 위해 신원조사가 필요할 때	.87	.84
불륜 문제 발생시	.85	
사생활 침해를 당했을 때	.80	
독립변수: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		
민간조사원은 내가 원하는 데로 수사를 해 줄 것이다	.83	.82
민간조사원은 경찰보다 내 의사를 존중할 것이다	.90	
민간조사원은 나를 위해 일 할 것이다	.85	
독립변수: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친절하다	.78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공정하다	.87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정직하다	.85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시민을 잘 보호해 준다	.88	.93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범죄를 잘 해결한다	.78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범죄를 잘 예방한다	.81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시민의 만족에 민감하다	.80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한다	.81	
독립변수: 경찰서비스 만족도		
나는 전반적으로 경찰활동에 만족한다	.82	
나는 경찰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노력에 만족한다	.85	
나는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82	
나는 경찰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83	.94
나는 경찰의 범죄피해 대처에 만족한다	.85	
나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만족한다	.87	
나는 경찰의 범인 검거(범죄해결) 능력에 만족한다	.83	
나는 경찰의 현 치안서비스에 만족한다	.84	
독립변수: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 능력에 대한 인식		
민간조사관은 경찰보다 수사력이 뛰어날 것이다	.91	.78
민간조사관은 경찰보다 정보력이 뛰어날 것이다	.91	

아전인수식 수사에 대한 열망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요인적재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뢰도 값(Cronbach's alpha)은 .82로 나타나 변수의 측정이 매우 신뢰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일반적 태도 역시 요인적재량이 높으며, 신뢰도 역시 높았고(α=.93), 경찰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측정 역시 매우 높은 신뢰도(α=.94)를 보였다.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loadings=.91)는 매우 높게 나왔지만, 신뢰도 값(α=.78)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하지만, 여전히 허용가능한 범위에 있다). 이상의 각각의 변수들은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scale로 구성되었다.

아래의 〈표 9〉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scale의 서술적 통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 경찰업무에 대한 민간조사선호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22.4), 전형적인 민간조사업무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11.6). 시민들의 사적정의구현에 대한 열망(3.1),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8.3),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에 대한 인식(6.0), 도덕성(3.2),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인식(3.1) 등 편향적이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태도(23.8)와 서비스 만족도(24.4)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9〉 Scale의 서술적 통계 결과

	평균	St.D.
민간조사선호(경찰업무,8items:8~40, 높을수록 비선호)	22.4	6.9
민간조사선호(민간업무,4items:4~20, 높을수록 비선호)	11.6	3.7
사적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1item: 1~5,높을수록 적음)	3.1	0.9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3items:3~15,높을수록 적음)	8.3	2.5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8items:8~40,높을수록 부정적)	23.8	5.0
경찰서비스 만족도(8items:8~40,높을수록 불만족)	24.4	5.4
수사/정보능력에 대한 인식(2items:2~10,높을수록 부정적)	6.0	1.7
도덕성에 대한 인식(1item:1~5, 높을수록 부정적)	3.2	0.9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1item:1~5, 높을수록 부정적)	3.1	0.9

4.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음의 〈표 10〉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ulinearity)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종속변수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r=.69). 비록 이 수치는 높은 상관관계를 의미하지만, culinearity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두 종속변수를 각각 분석하였기 때문에 회귀분석 시 통계적 문제점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다.

종속변수 1(DV1: 전통적인 경찰의 업무에 대한 민간조사관 선호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로는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 경찰서비스 만족도,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에 대한 인식, 민간조사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은 전통적으로 경찰의 업무에 속하는 사건/사고 발생 시 민간조사관을 더 선호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35). 즉, 기존의 경찰 업무에 속하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이 강할수록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이 높을수록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의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r=.24),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이 경찰보다 뛰어나다는 인식을 소유할수록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35). 또한, 민간조사관들이 경찰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중할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시민들은 민간조사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18). 반면,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불만족스러운 시민일수록 경찰의 전통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사건/사고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는 민간조사관을 고용하겠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5).

〈표 10〉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DV1	DV2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V12
DV1	1													
DV2	.69**	1												
V1	.03	.07	1											
V2	-.01	.07	.14*	1										
V3	.00	.07	.74**	.08	1									

	DV1	DV2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V12
V4	.03	.08	-.21**	.28**	-.22**	1								
V5	-.12	-.03	-.00	.00	.09	.03	1							
V6	.35**	.25**	-.17*	-.08	-.21**	-.02	.07	1						
V7	.24**	.20**	-.09	-.22**	-.07	-.18**	-.06	.29**	1					
V8	-.05	-.20**	-.10	-.14*	-.08	-.09	-.08	.13	.24**	1				
V9	-.25**	-.26**	-.07	-.04	.04	-.02	-.01	.02	.05	.58**	1			
V10	.35**	.25**	-.07	-.14*	-.12	-.13	.03	.33**	.28**	.10	-.11	1		
V11	.13	.06	-.28**	-.02	-.22**	.17*	.17*	.43**	.03	.21**	.09	.32**	1	
V12	.18**	.10	-.19**	-.10	-.22**	.06	.11	.44**	.24**	.19**	.05	.41**	.61**	1

DV1: 전형적 경찰업무, DV2: 전통적 민간조사관 업무, V1: 나이, V2: 성별(여=0,남=1), V3: 결혼관계(기타=0,기혼=1), V4: 교육수준, V5: 월수입, V6: 사적 정의 구현 욕망, V7: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 V8: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 V9: 경찰서비스 만족도, V10: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 능력에 대한 태도, V11: 민간조사관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V12: 민간조사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종속변수 2(DV2: 전형적인 민간조사관 업무에 대한 민간조사관 선호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로는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 경찰서비스 만족도,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형적인 민간조사업무(지금의 흥신소, 혹은 심부름센터 업무)에 해당하는 사건/사고 발생시,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이 높을수록(r=.25),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이 높을수록(r=.20),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이 경찰보다 뛰어나다고 인식할수록(r=.25)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들 중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부정적일수록(r=-.20),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을수록(r=-.26)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은 낮아지며(r=-.17), 민간조사관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며(r=-.28), 민간조사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인(r=-.19)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높았으며(r=.28),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이 높게 나타났고(r=-.22),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r=-.14),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이 경찰보다 뛰어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4). 또한, 기혼자 일수록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이 높게 나타났고(r=-.21), 민간조사관의 도덕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22 & -.22). 교육수준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r=-.18), 민간조사관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17). 월 소득과 관련해서는, 월수입이 많을수록 민간조사관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17).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이 강할수록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9),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이 경찰보다 뛰어나다는 인식을 가지며(r=.33), 민간조사관의 도덕성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43 & .44).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이 강할수록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r=.24), 민간조사과의 수사/정보력이 경찰보다 뛰어나다고 인식했으며(r=.28), 민간조사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4).

경찰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견지할수록, 시민들은 경찰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 했으며(r=.58), 민간조사관의 도덕성이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1 & .19).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이 경찰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시민일수록 민간조사관의 도덕성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r=.32 & .41), 민간조사관의 도덕성에 대해 긍정적 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61).

5.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가. 전통적 경찰 업무와 관련한 민간조사관 선호도

아래의 〈표 11〉은 두 종속변수들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경찰 업무로 인식되는 사건/사고[128] 발생시, 월 수입이

128) 전통적인 경찰의 업무로 인식되는 사건/사고들은 〈표 8〉을 참고 하기 바란다.

많을수록(β=-.01), 그리고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이 강할수록(β=2.0) 시민들은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수입이 1만원 증가할 때마다, 민간조사관을 .01 단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이 1 단위 증가할 때마다, 민간조사관 선호도는 2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개인적 욕망이 민간조사관 선호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개인적 욕망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 전통적 경찰업무에 대한 민간조사 선호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262), 선호도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DV1: 전통적 경찰업무		DV2: 전형적 민간조사업무	
	B	St.Error	B	St.Error
Constant	11.97	4.95	8.03	2.74
사회인구학적/개인적 특질				
나이	.01	.06	−.01	.03
성별(여=0, 남=1)	.13	.94	.37	.53
결혼관계(기타=0, 기혼=1)	1.45	1.47	1.36	.80
교육수준	.99	.56	.72*	.31
월수입	−.01*	.00	−.00	.00
사적 정의 구현 욕망	2.00**	.59	.85*	.34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	.38	.21	.25*	.12
경찰에 대한 인식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	−.04	.13	−.18**	.07
경찰서비스 만족도	−.24*	.12	−.05	.06
민간조사관에 대한 인식				
수사/정보능력에 대한 인식	1.07**	.31	.39*	.17
도덕성에 대한 인식	−.19	.67	−.07	.37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46	.63	−.23	.34
Adjusted R2	.20		.17	

또한, 경찰서비스에 불만족 할수록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4),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이 경찰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1.07). 즉,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1단위 감소 할 때마다, 민간조사관 선호도 .24단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에 긍정적 인식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민간조사관 선호도 1단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에 대한 인식은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Beta=.258).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경찰 서비스 만족도(Beta=-.187), 월수입(Beta=-.156)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모델은 민간조사관 선호도 변화의 2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20).

나. 전형적인 민간조사관 업무와 관련한 민간조사관 선호도

전형적인 민간조사관의 업무(현재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업무)로 인식되는 사건/사고 발생시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 그리고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은 선호도와 정관계(positive relationship)를 유지하며(β=.72), 교육수준이 1 단계 증가할수록 민간조사관을 .72 단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9]

개인적인 특성은 모두 선호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이 1단위 증가할수록 민간조사관 선호도는 .8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β=.85),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이 증가할수록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의사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전인수식 수사에 대한 열망 역시 민간조사관 선호도과 정적 관계를 보여(β=.25),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이 증가할수록,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경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할수록 민간조사관 선호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8). 특히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129) 민간조사관 선호도는 수치가 증가할수록, 고용의사는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민간조사관 고용의사는 낮아진다고 결론 내려져야 함을 주지하기 바란다. 〈표 9〉 참조 요망.

민간조사관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Beta=-.247),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나 긍정적 태도의 향상은 전형적인 민간조사관 사건에 대한 민간조사관 선호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민간조사관 선호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9).

경찰에 대한 태도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Beta=.20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수준(Beta=.179),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에 대한 인식(Beta=.174),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Beta=.166)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본 모델은 민간조사관에 대한 선호도 변화의 1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17).

제2절 경찰 데이터 분석 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징

아래의 〈표 12〉는 설문에 참여한 경찰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참여 경찰관 중 92.3%가 남자였으며, 7.7%만이 여성 경찰관으로 나타나, 표본이 총 경찰 인구의 성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 연령은 25세, 최대 연령은 58세로 평균 연령은 39세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설문대상자들은 기혼으로 나타났다(85.3%).

〈표 12〉 설문 참여 경찰관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n	%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47	92.3		
	여자	29	7.7		
나이		Min=25	Max=58	39.0	6.7
결혼관계	미혼	54	14.4		
	기혼	319	85.3		
	이혼	1	.3		

		n	%	평균	표준편차
학력	중학교 졸업	1	.3		
	고등학교 졸업	78	20.9		
	단과대 졸업	87	23.3		
	대학교 졸업	201	53.9		
	대학원 이상	6	1.6		
계급	순경	30	8.1		
	경장	80	21.5		
	경사	205	55.1		
	경위	56	15.1		
	경감	1	.3		
경찰경력(년)		Min=0	Max=33	12.8	7.0
보직경력(년)		Min=0	Max=20	3.1	4.1

설문에 참여한 경찰관의 약 54%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단 1명의 경찰관이 중학교 졸업, 6명만이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였다. 설문 대상자의 약 55%가 경사 계급 보유자였으며, 다음으로 경장(21.5%), 경위(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 1명의 경감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평균적으로 약 13년의 총 경찰 근무 경력을 보였으며, 최대 경력은 33년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직에 근무한지는 최대 20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3년 정도의 근속 경향을 보였다.

2. 서술적 통계 결과

〈표 13〉은 설문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찰관들은 민간조사관의 활동이 경찰활동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무려 71.5%의 응답자들이 민간조사관들이 경찰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다만 8.2%의 응답자만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하였다. 이와 유사한 질문인 "민간조사관 활동은 경찰의 업무량만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문항에 40.9%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으로 대응했고, 다만 19.7%만이 동의하였다.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민간조사관 활동이 치안서비스 공백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68.1%), 민간조사관 활동은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63.5%). 또한 민간조사관들은 경찰보다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66.0%), 설문에 참여한 경찰관의 반 이상이 민간조사제도와 민간조사관의 활동에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13〉 경찰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태도

	매우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반대
경찰활동에 도움	99 (26.3%)	170 (45.2%)	76 (20.2%)	26 (6.9%)	5 (1.3%)
경찰 업무량만 증가	11 (2.9%)	63 (16.8%)	147 (39.3%)	136 (36.4%)	17 (4.5%)
치안서비스 공백 완화	69 (18.4%)	186 (49.7%)	81 (21.7%)	34 (9.1%)	4 (1.1%)
범죄해결에 도움	43 (11.6%)	193 (51.9%)	97 (26.1%)	34 (9.1%)	5 (1.3%)
전문 기술 보유	21 (5.6%)	226 (60.4%)	80 (21.4%)	40 (10.7%)	7 (1.9%)
교육/훈련 부족	30 (8.0%)	184 (49.3%)	109 (29.2%)	41 (11.0%)	9 (2.4%)
경찰보다 자질 부족	21 (5.8%)	103 (28.3%)	168 (46.2%)	64 (17.6%)	8 (2.2%)
수사 능력 부족	16 (4.3%)	91 (24.5%)	178 (47.8%)	81 (21.8%)	6 (1.6%)
자신의 이익이 우선	37 (9.9%)	146 (39.0%)	121 (32.4%)	58 (15.5%)	12 (3.2%)
PI정보 제공 거부경향	8 (2.2%)	94 (26.4%)	182 (51.1%)	64 (18.0%)	8 (2.2%)
접촉/업무협조 회피	12 (3.2%)	94 (25.0%)	153 (40.7%)	106 (28.2%)	10 (2.7%)

하지만, 이러한 민간조사관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민간조사관들의 자질이나 업무의 의도, 능력 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3%에 해당하는 경찰관들이 민간조사관들은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28.8%가 민간조사관들은 수사 능력

이 부족할 것이라는 등, 경찰보다 자질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34.1%). 이러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민간조사관들의 업무 의도, 즉 민간조사관들은 의뢰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할 것이라는 태도(48.9%)와 연관되어 민간조사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다수가 경찰의 업무를 경감시켜줄 것이며 치안공백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 시각의 결과로 28.6%가 민간조사관들은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려할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고, 28.2%의 응답자들은 가급적이면 민간조사관들과의 접촉이나 업무 협조를 피하려 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비슷한 비율의 경찰관들(30.9%)은 민간조사관들과의 접촉이나 업무 협조를 피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시 민간조사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4〉는 경찰관들에게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조 경향을 질문한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조사관의 자질과 역량, 의도 등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민간조사관 활동이 경찰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경찰관들은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아래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54.6%의 경찰관들은 민간조사관과 상호협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무려 57.1%의 경찰관들이 민간조사관들과 업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민간조사관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해결을 위해서 업무협조를 하겠다는 응답이 43.7%로 나타났으며, 경쟁보다는 민간조사관들과의 공조수사를 선호하는 경향도 62.7%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조사관들과의 업무협조는 현재 경찰조직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접촉 및 업무협조 회피 경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51.0%에 해당하는 경찰관들이 현재 자신의 상사들은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조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조직의 화합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국내의 경찰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협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14〉 경찰의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조 경향

	매우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반대
상호 협력이 기본	38 (10.2%)	166 (44.4%)	112 (29.9%)	51 (13.6%)	7 (1.9%)
업무상 좋은 관계유지	25 (6.7%)	189 (50.4%)	132 (35.2%)	24 (6.4%)	5 (1.3%)
요청시 협력할 것이다	18 (4.8%)	146 (38.9%)	155 (41.3%)	48 (12.8%)	8 (2.1%)
경쟁보다 공조수사	30 (8.0%)	205 (54.7%)	94 (25.1%)	43 (11.5%)	3 (.8%)
상사의 협조 회피경향	27 (7.4%)	159 (43.6%)	152 (41.6%)	20 (5.5%)	7 (1.9%)

이상에서는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조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attitude)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음의 〈표 15〉는 비록 아직 합법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경찰관들은 얼마만큼의 접촉과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가 보여주듯이,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조에 대한 의견과를 다르게, 현재 실질적 업무 협조는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범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침해, 기업회계부정 등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의 경우 80.3%가 민간조사관과 협조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5〉 경찰의 민간조사관과의 실질적 업무 협조

	협조안함	월1-4회	월5-10회	월11-20회	거의매일
사이버,보험,지적재산,기업회계부정 등	273 (80.3%)	64 (18.8%)	2 (.6%)	0 (0%)	1 (.3%)
분실/도난 재산 파악	291 (85.8%)	43 (12.7%)	3 (.9%)	1 (.3%)	1 (.3%)
사망,상해,화재,교통사고,멸실,훼손 등 고의입증조사	252 (74.8%)	77 (22.8%)	6 (1.8%)	1 (.3%)	1 (.3%)
행불,미아,도피추적등	284 (83.3%)	51 (15.0%)	3 (.9%)	2 (.6%)	1 (.3%)
증거자료 확보	288 (86.2%)	41 (12.3%)	2 (.6%)	2 (.6%)	1 (.3%)
신원조회 등	287 (84.7%)	47 (13.9%)	2 (.6%)	1 (.3%)	2 (.6%)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85.8%), 행방불명자, 미아, 소재불명 친인척,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의 소재파악(83.3%),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86.2%), 개인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조사(신원조회 등)(84.7%) 등 대부분의 경우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조는 아주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 훼손 등 각종사고와 원인 및 책임(고의입증등)의 조사의 경우는 다소 높은 업무 협조률을 보였는데, 74.8%만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에 대한 협조 비율과 비교해 보면, 민간조사관과의 비협조 원인이 민간조사제도가 아직 합법화 되지 않은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보험, 지적재산침해, 기업회계 부정 등의 조사 시, 대략 20%에 해당하는 다른 경찰관들은 대략 월 1~4회의 업무협조를 하고 있으며, 대체로 문서(32.0%)나 구두(36.0%), 혹은 두 가지 협조 형식을 모두 사용(32.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분실이나 도난 사건의 경우 구두 협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0.3%), 협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멸실, 훼손 등 고의입증조사의 경우 역시 구두 협조 형식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3.0%). 이러한 경향은 행불, 미아, 도피 추적 등의 경우(39.3%)나 신원조회 등의 경우(40.7%)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지만, 법원에 제출될 증거자료 조사에 대한 경우 51.9%가 문서 형식을 이용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가 경찰의 민간조사관과의 협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16〉 업무 협조 형식

	문서	구두	둘 다
사이버, 보험, 지적재산, 기업회계부정 등	31 (32.0%)	35 (36.0%)	31 (32.0%)
분실/도난 재산 파악	25 (34.7%)	29 (40.3%)	18 (25.0%)
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멸실, 훼손 등 고의입증조사	30 (28.0%)	46 (43.0%)	31 (29.0%)

	문서	구두	둘 다
행불, 미아, 도피추적 등	24 (28.6%)	33 (39.3%)	27 (32.1%)
증거자료 확보	40 (51.9%)	17 (22.1%)	20 (26.0%)
신원조회 등	33 (40.7%)	33 (40.7%)	15 (18.5%)

3. 효율성 예측 결과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인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에 따른 경찰활동의 효율성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자는 경찰의 민간조사관과의 협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상정되고 있는 법안들이 민간조사관의 수사 업무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본 연구는 수사 전단계의 경찰활동을 정리하고, 그것들 중에서 민간조사관에게 이양 될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해 현실적 협력 실태를 질문하였다.

다음의 〈표 17〉은 연구 참여 경찰관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량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민사사건(고소 등)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활동(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 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건수는 1인이 최대 120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5건의 업무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7명의 응답자들의 총 업무량은 2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업무가 일선 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인 평균 역시 15건으로 이 업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참조).

다음으로는 탐문조사활동(정보수집, 정리, 확인)이 평균 13.6건, 89명중 총 1211건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인 정보 확인 활동(1인 평균 13.6건, 69명중 총 428건), CCTV 등 확인활동(1인 평균 9.8건, 103명중 총 1005건), 신원확인 활동(1인 평균 9.4건, 62명 중 585건) 순으로 많은 업무량을 보였다. 가장 적은 업무량으로 보인 분야는 불륜 등 사건 조사 활동으로 나타나, 1인 평균 3.8건, 33명중 총 125건으로 나타났다.

〈표 17〉 경찰관 담당 업무건수

	최소	최대	응답/총	평균	편차
사실관계확인 증거자료수집	0	120건	147명 2200건	15건	17.6
행불,미아,소유불명재산 소재	0	100건	84명 555건	6.6건	12.3
재산 도피 관계,소재 파악	0	30건	43명 193건	4.5건	5.0
고의입증 조사	0	70건	52명 331건	6.4건	11.9
분실,도난 재산 소재 파악	0	60건	71명 563건	7.9건	10.6
가출인 정보 확인	0	100건	69명 428건	12.4건	13.9
탐문조사(정보수집,정리,확인)	0	500건	89명 1211건	13.6건	53.1
기실종자 정보 조사	0	30건	42명 221건	5.3건	7.0
신원확인	0	50건	62명 585건	9.4건	11.0
행적/주소지 파악	0	100건	85명 671건	7.9건	12.0
공공,사립기관 확인활동	0	50건	57명 360건	6.3건	8.1
CCTV 등 확인활동	0	300건	103명 1005건	9.8건	29.6
불륜 사건 등 조사	0	30건	33명 125건	3.8건	6.2

업무별 월 평균 소비시간에 대한 질문에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수집 활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참조). 1인 평균 월 65.6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540시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140명의 응답자의 총 소비시간은 무려 9179시간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큰 업무시간 소비 분야는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파악 활동으로 나타났는데, 1인 평균 25.7시간을 해당 업무를 위해 소비하고 있었으며, 74명 응답자의 총 소비시간은 1903시간으로 나타났다. 고의입증 조사에는 1인 평균 23.5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응답자 56명의 총 소비시간은 1315시간으로 나타났다. 탐문조사 역시 소비시간이 높은 업무로 나타났는데, 1인 평균 20.7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응답자 92명의 총 소비시간은 1901시간으로 나타났다. 또 재산 도피 관계 및 소재 파악에도 1인 평균 19.3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44명의 총 소비시간은 851시간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1인 담당건수가 가장 많은 민사사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자료 수집 활동은, 형사사건의 수사 업무와는 별개로 현재 경찰에 많은 업무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조사 업무가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 이후 민간조사관에게 이양된다면, 경찰 개인의 업무 소비시간이 많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 담당 업무건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재산 도피 관계, 소재 파악(1인 평균 4.5건), 고의입증조사(1인 평균 6.4건), 분실, 도난 재산 소재 파악(1인 평균 7.9건)의 업무에 대해, 1인당 평균 소비되는 시간은 오히려 높게 나타나, 평균 대략 19시간에서 26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업무는 경찰관 1인 담당 건수는 낮지만, 업무에 소비되는 시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에 방해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에 대한 민간조사관 이양은 경찰활동 효율성 향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표 18〉 업무별 월 평균 소비시간

	최소	최대	응답/총	평균	편차
사실관계확인 증거자료수집	0	540시간	140명 9179시간	65.6시간	102.6
행불,미아,소유불명재산 소재	0	150시간	87명 1386시간	16시간	24.0
재산 도피 관계,소재 파악	0	360시간	44명 851시간	19.3시간	54.2
고의입증 조사	0	360시간	56명 1315시간	23.5시간	54.8
분실,도난 재산 소재 파악	0	420시간	74명 1903시간	25.7시간	75.6
가출인 정보 확인	0	100시간	74명 914시간	12.4시간	19.6
탐문조사(정보수집,정리,확인)	0	200시간	92명 1901시간	20.7시간	30.1
기실종자 정보 조사	0	150시간	47명 801시간	17시간	31.6
신원확인	0	200시간	66명 834시간	12.6시간	26.7
행적/주소지 파악	0	100시간	85명 1090시간	12.8시간	17.1
공공,사립기관 확인활동	0	100시간	61명 670시간	11시간	18.2
CCTV 등 확인활동	0	120시간	107명 1454시간	13.6시간	20.4
불륜 사건 등 조사	0	90시간	37명 353시간	9.5시간	16.0

앞서 분석한바와 같이, 비록 현재로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현재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조는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수사 전단계의 업무에 있어서 민간조사관의 활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 실태는 다음의 〈표 19〉에 나타난다. 역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수집 활동에 민간조사관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1인 평균 2.5건의 사건에 민간조사관 활용), 44명의 응답자들의 총 사건 수는 108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불, 미아, 소유불명 재산 소재파악 활동에 1인 평균 2.4건의 민간조사관 관련 비율을 보였고, 28명의 응답자 총 건수는 68건으로 나타났다. 행적 혹은 주소지 파악 활동에는 1인 평균 2.4건, 25명 중 총 59건의 민간조사관 관련 비율 실태를 보였다. 분실, 도난 재산 소재파악과 기실종자 정보 조사 활동이 이어 높은 민간조사관 관련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민간조사관이 관련된 사건 수

	최소	최대	응답/총	평균	편차
사실관계확인 증거자료수집	0	10건	44명 108건	2.5건	2.9
행불,미아,소유불명재산 소재	0	15건	28명 68건	2.4건	3.7
재산 도피 관계,소재 파악	0	10건	15명 21건	1.4건	2.6
고의입증 조사	0	5건	15명 14건	1건	1.4
분실,도난 재산 소재 파악	0	15건	16명 33건	2.1건	3.8
가출인 정보 확인	0	7건	18명 31건	1.7건	2.5
탐문조사(정보수집,정리,확인)	0	5건	24명 42건	1.8건	1.8
기실종자 정보 조사	0	15건	15명 29건	1.9건	3.8
신원확인	0	16건	18명 33건	1.8건	3.8
행적/주소지 파악	0	17건	25명 59건	2.4건	3.5
공공,사립기관 확인활동	0	10건	19명 27건	1.4건	2.4
CCTV 등 확인활동	0	8건	21명 37건	1.8건	2.2
불륜 사건 등 조사	0	6건	13명 16건	1.2건	1.7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설문 참여 한 경찰관에게 민간조사관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을 경우, 자신의 업무 시간중 절약이 가능할 시간에 대해 추측하여 응답해 주길 요청하였고,[130] 그 결과가 다음의 〈표 20〉에 제시되고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업무 소비 시간 절약 가능 업무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자료 수집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1인 평균 17.8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응답자 56명의 총 예상 절약 시간은 무려 994시간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예상 절약 시간을 보여준 업무 분야는 탐문조사(정보수집, 정리, 확인)으로 1인 평균 10.8시간 감소, 38명 응답자 총 감소량은 410시간으로 나타났고, 불륜 사건 등 조사는 1인 평균 9시간 절약, 17명 응답자 총 절약 시간은 153시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불, 미아, 소유불명 재산 소재 파악, 신원확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업무 분야를 종합하면, 응답에 참여한 경찰관이 민간조사관을 활용할 경우 월 3323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총 응답자는 392명), 이는 1인 평균 월 8.5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수치이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보면,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 되고, 경찰이 수사 전단계의 업무를 민간조사관과 협조하여 조사할 경우 월 평균 경찰 1인당 대략 8시간 30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경찰 조직 전체를 놓고 본다면 엄청난 업무 시간의 절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 업무 협조를 넘어 부분적 업무 이양이 이루어진다면, 경찰업무 소비 절약 시간은 이보다 더욱 더 커질 것임은 명약관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130) 물론 이상의 결과는 설문에 참여한 경찰관 개개인이 자신의 업무량과 소비시간, 예상 절약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응답해 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재로 경찰관의 업무량과 소비시간, 그리고 민간조사관 활용 시 절약 가능한 경찰력 소비시간에 대한 정확한 수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연구자가 개개 경찰관의 하루 업무량과 소비시간을 직접 측정하지 않는 이상, 현 연구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연구 방법일 것이며, 특히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가장 이상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표 20〉 민간조사관 협조시 예상 절약 업무시간

	최소	최대	응답/총	평균	편차
사실관계확인 증거자료수집	0	200시간	56명 994시간	17.8시간	33.7
행불,미아,소유불명재산 소재	0	50시간	38명 297시간	7.8시간	10.3
재산 도피 관계,소재 파악	0	20시간	17명 77시간	4.5시간	5.3
고의입증 조사	0	20시간	21명 117시간	5.6시간	6.2
분실,도난 재산 소재 파악	0	20시간	27명 166시간	6.2시간	6.1
가출인 정보 확인	0	50시간	30명 214시간	7.1시간	9.3
탐문조사(정보수집,정리,확인)	0	120시간	38명 410시간	10.8시간	20.0
기실종자 정보 조사	0	50시간	18명 136시간	7.6시간	11.4
신원확인	0	100시간	25명 189시간	7.5시간	19.8
행적/주소지 파악	0	25시간	40명 196시간	4.9시간	5.2
공공,사립기관 확인활동	0	12시간	26명 117시간	4.5시간	4.0
CCTV 등 확인활동	0	40시간	39명 257시간	6.6시간	7.9
불륜 사건 등 조사	0	100시간	17명 153시간	9.0시간	23.8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 토론

1. 시민 대상 설문 분석 결과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설문 참여자의 절반정도가 경찰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의 대범죄 활동에 대한 활동(특히 범죄 해결과 예방에 대한 구체적 의견)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에는 노력하지만, 경찰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치안수요의 파악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둘째,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경찰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분석은, 경찰의 일반적 활동 및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만족, 범죄자 검거 등 범죄 해결 능력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을 하여, 경찰의 주요 업무인 범죄 예방, 해결, 피해자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활동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전반적인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민들은 대체로 민간조사관 활동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사/수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의뢰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조사해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간조사관들은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할 것이라는 인식은 시민의 경찰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Hallcrest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활동(policing)은 공공 형사정책기관(여기서는 경찰)이 제공해야 하는 하나의 상품(product)으로 인식 되어 질수 있으며, 따라서 민영화가 가능하고,[131] 민간경찰활동(private policing)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산업분야로 범죄와 범죄에 대한 공포(fear of crime)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하였

다.[132] 민간조사업체의 특성과 경영실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민간조사 의뢰인들은 민간조사기업의 전문성 및 기업적 성격을 갖고 서비스에 집중하는 회사일수록 경영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는 business-minded된 전문조직을 쫓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133] 이에 따라, 경찰은 시민의 치안서비스 욕구에 대해 보다 서비스에 집중(service-oriented)하는 태도를 보여야,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에 따라 경찰의 위상을 적절히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연구가 밝힌 바와 같이, 시민들은 민간조사관이 사적인 정의구현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표 6〉 참조), 치안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시민들은 정의구현을 위한 경찰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5〉 참조). 따라서, 여전히 높은 치안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고, 동시에 시민의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업무는 공적 질서유지와 범죄 예방 및 해결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이러한 기존의 업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데 역점을 두고, 시민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시민들은 민간조사관들의 정보력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수사능력에 대해서는 경찰이 민간조사관보다 나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민간조사관은 경찰보다 도덕성이 다소 부족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에도 취약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미의 기존연구 결과[134]와는 다소 대치되는 결과로서, 민간조사제도(지금의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에 대한 사회적 및 역사적인 부정적 시각과 배경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민간조사관 선호도에도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33%의 시민이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를 희망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조사관에 대한 수사/조사 의뢰는 단순 선호도와는 별개로 다른 여러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경찰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지금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131) Chaiken & Chaiken. 앞의 논문 참조.
132) Cunningham & Taylor. 앞의 논문.
133) Gill & Hart. 앞의 논문 (1997a).
134) Gill, Hart & Stevens. 앞의 논문.

선호 경향을 보여, 합법화 이후 경찰의 민간조사관의 적극적 활용이 없다면, 시민의 경찰 혹은 민간조사 선호 변동에 의해 경찰의 업무량이 변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민의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 아전인수식 수사에 대한 열망,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에 대한 인식, 민간조사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경찰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경찰업무를 민간조사관에게 의뢰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에는 경찰에게 신고하여 사건 처리를 요청 하겠지만,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 된다면, 민간조사관은 자신의 의도와 욕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사적 정의 구현/아전인수식 수사)과 수사/정보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경찰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민간조사관을 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건/사고를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반대로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경찰의 위상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만족도 향상은 시민들을 치안서비스의 소비자로 인식하고 사기업이 제공하는 것 같은 질적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변량회귀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전통적 경찰업무에 해당하는 사건/사고 발생시, 시민의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열망은 민간조사관을 고용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 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경찰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민간조사관 선호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으로 경찰의 역할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정의구현과 치안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경찰을 불신하고 개인적으로 사건/사고를 해결하려는 자발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궁극적으로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는 경찰의 위상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에 앞서, 경찰은 시민의 정의 구현에 대한 기대와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궁극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민의 치안서비스 수요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시민의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욕망, 아전인수식 수사 열망, 민간조사관의 수사/정보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전형적인 민간조사업무에 해당하는 사건/사고 발생 시 민간조사관을 고용하겠다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언급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는 경찰에 대한 잠재적 불신이나 불만을 치안서비스 수요와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표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경찰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고양하기 위해, 민간조사관들을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민간조사관들의 용역을 경찰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치안서비스 공백을 경찰의 주도하에 채울 수 있도록 하며, 이로써 시민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경찰 대상 설문 분석 결과

377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데이터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중요한 몇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민간조사관의 활동은 경찰에 부정적 방해보다는 긍정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는 치안서비스 공백을 채우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민간조사관들이 경찰보다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어서 경찰의 적극적인 민간조사관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특히, 업무 협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려 57%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민간조사관과 상호 협력적 업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민간조사관들과의 공조수사를 선호하는 경향도 63%로 나타나,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는 시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경찰의 민간조사관 활용을 통하여 업무량을 감소시킬 가능성 역시 높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이러한 민간조사관의 활용 결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로 민간조사관에 대한 자질이나 업무의 금전적 의도, 능력 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 협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경찰조직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조사관과의 접촉 및 업무협조 회피 경향은 실질적인 업무 협조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1%에 해당하는 경찰관들이 현재 자신의 상사들은 민간조사관과의 업무 협조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

였고, 조직의 화합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국내 경찰조직에서 이러한 상사의 의견은 무시 못 할 중요한 영향을 갖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되고 민간조사제도의 활용이 경찰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경찰내부의 분위기와 일선 경찰관의 정책적 민간조사제도 활용은 손쉽게 이루어 질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와 함께 경찰의 민간조사 활용 및 업무 협조에 대한 정책의 발효가 민간조사용역을 경찰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단계라는 것이다.

셋째, 현재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업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들과의 업무협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록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은 민간조사관을 활용하여 대략 14~25%에 해당하는 업무상 협조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업무 협조 형태는 문서나 구두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의 수집 등 문서화의 필요성이 절대적인 경우에는 민간조사관들로부터 업무상으로 문서를 통하여 음성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음의 〈표 21〉은 효율성 예측을 위한 결과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네 개의 항목에서 모두 최상위에 위치한 업무 분야는 민사사건의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활동으로 나타났다.

〈표 21〉 효율성 예측을 위한 결과 비교

	당당 업무 건수	업무 소비 시간	민간조사관련건수	예상 절약 시간
1	사실관계확인 증거자료수집	사실관계확인 증거자료수집	사실관계확인 증거자료수집	사실관계확인 증거자료수집
2	탐문조사	분실,도난 재산 소재 파악	행불,미아,소유불명 재산 소재파악 행적/주소지 파악	탐문조사
3	가출인정보확인	고의입증 조사	분실,도난 재산 소재 파악	불륜 사건조사
4	CCTV확인활동	탐문조사	기실종자정보조사	행불,미아,소유불 명재산소재파악
5	신원확인	재산 도피 관계 소재 파악	탐문조사	기실종자정보조사

구체적으로 경찰의 월 평균 업무 소비시간을 조사한 결과, 147명의 응답자가 월 총 2200건을 담당하고 있으며(1인 담당건수 15건), 140명의 응답자가 월 총 9179시간을 소비하고 있는(1인 평균 소비시간 65.6시간) 민사사건(고소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활동(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 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이 경찰의 가장 과중한 업무 분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조사관(현재의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직원)과 업무 협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4명 응답자가 월 108건의 업무협조, 1인 평균 2.5건). 이러한 조사 업무가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 된 후 민간조사관에게 이양된다면, 경찰 개인의 업무 부담 및 시간은 막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찰관은 민간조사관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이러한 업무에 1인 평균 대략 17.8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56명의 응답자가 총 994시간 절약 추정).

다섯째, 〈표 21〉에 나타난 것처럼, 경찰의 탐문조사 활동은 월 담당 업무 건수, 소비시간, 민간조사관 관련 건수, 예측 절약 시간 등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탐문조사 활동을 실행해야 할 담당 사건수가 많으며, 이에 대한 소비시간도 높게 나타났고, 또 민간조사관이 관련된 사건 수도 높았으며, 민간조사관이 활용될 경우 예상되는 경찰력 소비시간 역시 높게 나타나, 탐문조사 활동에 대한 민간조사관 활용 혹은 이러한 업무의 민간조사 이양은 경찰력 낭비를 해소하고, 치안공백을 채우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임을 발견하였다.

여섯째, 경찰관 1인당 평균 담담 업무건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재산 도피 관계, 소재 파악(1인 평균 4.5건), 고의입증조사(1인 평균 6.4건), 분실, 도난 재산 소재 파악(1인 평균 7.9)건의 업무에 대해, 1인 평균 소비시간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표 17, 18, 21〉 참조). 또한 이에 대한 업무에 민간조사관이 관련된 사건수는 평균 1~2.1건으로 나타나, 평균적인 업무협조 비율을 보였지만(〈표 19〉 참조), 예상 업무 소요 절약 시간은 평균 4.5~6.2시간으로 나타나(〈표 20〉 참조), 경찰관들은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한 민간조사 활용이 다소 낮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대신, 사실관계확인 증거자료수집 활동 다음으로 예상 절약 업무시간이 높은 업무 분야는 탐문조사(정보수집, 정리, 확인)로 나타나(38명 응답자의 총 410시간, 1인 평균 10.8시간), 경찰관이 민간조사관을 활용하고 자 하는 선호 업무 분야는 실질적으로 민간조사관의 활용이 필요한 업

무 분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불륜사건 등의 조사에 무려 1인 평균 9시간의 업무 시간이 절약될 것이라는 경찰관들의 추정은, 전통적인 경찰의 업무는 경찰이 고수하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적극적으로 이양하여 민간조사관을 활용할 경우, 경찰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경찰 1인당 담당 업무 건 수는 낮지만, 평균 소비시간이 높은 업무 분야(즉, 재산 도피 관계/소재 파악, 고의입증 조사, 분실/도난/재산 도피 파악 등)에 대한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통적인 경찰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업무 이양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든 업무 분야를 종합해 볼 때, 응답에 참여한 경찰관이 민간조사관을 활용할 경우 월 3323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으며, 이를 총 응답자 392명으로 나누어 볼 때, 경찰관 1인 평균 월 8.5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비록, 이는 경찰관 개개인이 자신의 업무량과 소비시간, 그리고 민간조사관 활용시 절약할 수 있을 시간을 예측한 것이지만,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연구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예측 수치는 경찰의 민간조사제도 활용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즉, 민간조사관을 활용하여 경찰이 수사전단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경찰 1인 월 평균 대략 8시간 30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 조직 전체로 볼 때 막대한 시간의 절약이라고 하겠다. 여기에, 단순 협조나 활용의 수준을 넘어, 경찰관이 이러한 업무를 민간조사관에게 이양하여 조사활동을 맡기고, 결과를 받아 업무 처리에 활용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에 발맞추어 경찰은 민간조사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제고와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간조사관 활동이 경찰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경찰 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증적 데이터를 시민과 경찰로부터 수집·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제언은 크게 민간조사제도 합법화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로 나뉘는데,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정책제언은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이고, 이후 단계에 해당 하는 정책제언은 민간조사관 활용에 관한 것이다.

1. 시민의 치안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

경찰은 시민들이 갖는 경찰에 대한 일반적 그리고 구체적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시민들은 경찰의 범죄 예방, 해결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등에 불만족을 나타냈다.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 될 경우, 시민들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존하는 대신, 민간조사관을 고용하여 개인적인 사건/사고의 해결을 모색하려는 경향(민간조사 선호도)은 시민의 사적 정의 구현에 대한 열망과 경찰에 대한 불만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경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높을수록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간조사관을 선호함으로써 경찰의 위상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 이전에, 경찰의 신뢰도와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경찰의 실질적 치안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치안서비스 소비자로 인식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치안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경찰은 다음의 두 가지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찰은 경찰 내부 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연수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연수과정은 시민을 치안서비스 활동의 대상이 아니라, 치안서비스 수요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직의 화합과 질서를 중요시 하는 국내 경찰조직에서 상사의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직위에 위치한 경찰관의 시민에 대한 태도는 예하 경찰관의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관리직 경찰관에 대한 사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고양하는 것은 적극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경찰조직의 경영을 담당하는 관리직

경찰관이 사기업의 경영 마인드의 핵심인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이를 업무상 예하 경찰관 관리에 적용토록 한다면, 경찰 조직의 문화 개편와 함께 민영화의 압박에 따른 시대적 대응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경찰은 시민의 치안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필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일괄적인 범죄 예방, 해결 활동보다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치안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별, 시민 집단별 치안수요는 천차만별일 것이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치안 활동을 한다면, 시민의 만족도는 쉽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시 사적 정의 구현이나 경찰 치안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공권력으로서의 경찰 보다 사적 경찰력(즉, 민간조사관)을 동원하여 개별적 치안수요를 충족하려는 경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는 경찰의 위상을 더욱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적절한 치안수요의 조사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찰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위상을 확고히 할 방안이 될 것이다.

2. 경찰활동의 효율성 증대 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경찰활동에 막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경찰은 민간조사관 활용에 대한 정책적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조사관과 경찰 사이의 업무 협력 관계 형성과 강화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가 제시하고[135] 본 연구가 발견한 것과 같이,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업무 협조관계의 형성과 유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조직사이의 업무 협조에 대한 선명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법령 및 정책으로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136] 이를 위해서는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률에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업무 협력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민간조사관은 경찰에게, 혹은 경찰은 민간조사관에게 구할

135) Cunningham & Talyor. 앞의 논문.; Kakalik & Wildhorn. 앞의 논문.
136) 본 보고서의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p. 32-26)' 참조 요망.

수 있는 업무 협조 범위와 형식, 보고 체계 등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조사업법에 협력 조항을 신설하고, 여기에 상호사건소개, 상호정보교환, 장비대여 및 기술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137] Kakalik과 Wildhorn(1971)은 민간조사관이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업무상 어려움에 직면할 때, 반드시 경찰에게 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민간조사관은 24시간 지역 경찰과의 communication 채널을 유지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138] 특히, Shearing과 Stenning (1985)의 주장처럼,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정보교환은 업무 협조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에,[139] 민간조사관이 입수한 사건 관련 정보는 경찰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의 규제 내용 역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Prenzler & Sarre(2008)는 "smart regulation"을 주장하면서, 민간조사업은 하나의 정부조직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며, 범죄기록 조회, 지속적 교육·훈련, 응급처치자격, 행동강령, 마약 및 환각제 사용 금지조항, 면허료(license fee), 다양한 면허 종류(면허 수준별 차별화된 권한과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였다.[140] 이러한 규제와 정보의 입수에 대한 조항은 경찰의 관리 하에 민간조사제도가 운용되게 함으로써 치안공동생산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하며, 특히 치안공동생산자의 하나로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경찰이 공공의 질서 확립과 더불어 개인의 치안서비스 수요의 충족에 앞장설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업 관리 담당부처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에 따르면, 민간조사업무는 사실상 경찰의 업무와 비슷하거나 동일하며,[141]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라는 큰 줄기에서 바라볼 때, 경찰이 민간조사업을 통제·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조직체계라고 하겠다.[142] 따라서 보다

137) Scott & McPherson. 앞의 논문.
138) Kakalik & Wildhorn. 앞의 논문.
139) Shearing & Stenning. 앞의 논문.
140) Prenzler, T., & Sarre, R. (2008). Developing a risk profile and model regulatory system for the security industry. Security Journal, 21, 264-277.; 또한 나영민. 앞의 논문. 및 Prenzler, T., & King, M. (2002). The role of private investigators and commercial agents in law enforcement (Vol.234).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도 참조하기 바란다.
141) Becker. 앞의 논문. Scott & McPherson. 앞의 논문.
142) 독일의 경우 1978년 연방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간조사관이 습득한 모든 정보는 경찰에게 제출할

유연하고 원활한 경찰·민간조사관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경찰이 민간조사업의 담당부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당사자주의(adversary criminal justice system)에 입각한 현 형사사법제도에서,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 될 경우, 민간조사관은 변호사의 전용 조사관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으며,[143] 민간조사제도 담당부서가 법무부로 선정된다면, 이러한 위험성이 정당화 될 것이기 때문에, 사건/사고의 효율적 처리와 당사자주의에서 고소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조사업은 경찰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경찰은 내부적으로 시행령을 공표하여, 수사 전 단계에 해당하는 특정 업무를 민간조사관에게 이양할 수 있거나 민간조사관으로부터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사전에 선정하고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144] 이에 대해, 선행연구는 중범위 역할모델[145]이나 보조적 역할모델[146]을 주장하였지만, 본 연구는 현실적 상황[147]을 고려하여, 수사전단계의 업무를 민간조사관에게 이양하는 수사전단계 역할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에서 민간조사관에게 이양하거나 민간조사관의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는 수사전단계에 해당하는 경찰의 업무는 〈표 2〉에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 수사전단계 업무 중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수집 활동과 탐문조사활동, 재산 도피 관계 및 소재 확인 활동, 고의입증 조사 활동,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활동, 불륜 사건 조사 등에 우선하여 민간에 부분적 이양 혹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표 21〉 참조). 또한 민간조사관의 활용에 있어서 문서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보고의 주기와 보고 통제선(즉, 관련 부서)을 확립하여 관리 및 보고를 원활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비록 Hallcrest 연구에서는 민간조사관을 경찰과 대등한 혹은 동반자 관계로 보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Rand 연구에서 주장하는 보조적(supplimentary) 관계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치안서비스공동생산에 있어서 경찰에게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143) Frank & Schwartz. 앞의 논문.

144) 이러한 업무 분담 및 이양에 대한 논의는 Chaiken & Chaiken (1987)에 나오는 Division of labor, 이상원&이승철 (2007)에서 제시하는 공적영역의 사적영역화 주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145) 안동현. 앞의 논문.

146) Cunningham & Talyor. 앞의 논문.

147) 입안된 민간조사업법의 법리적 위치(본 보고서의 제 2장 제 3절 1. 치안공동생산론 부분 및 2. 해외사례 분석 부분 참조 요망)에서 볼 때 민간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않는 것은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 이후 역할모델은 경찰업무중 수사 전단계에 해당되는 업무만이 이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조사관의 역할 모델은 이러한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정책 방안들은 크게는 경찰내부의 민간조사관과의 협력 경향을 증대시킬 것이고,[148] 작게는 경찰관 개개인의 활동에 있어서 민간조사관의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Kakalick과 Wildhorn(1971)에 따르면, 경찰은 위기관리 필요시(즉, 홍수나, 폭동, 태풍, 화재 등) 지역 민간조사관들을 deputize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9] 이처럼, 명확하게 제시되는 협력 업무 분야와 임무, 책임의 규정은 두 조직 간의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업무 협력에 guideline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민간조사관이 갖는 업무상 의도(이익 창출), 수사 및 조사 능력(인적 자질), 훈련 및 교육 부족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협조를 피하려는 경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0]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결국 협력이 아니라 업무상의 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151] 궁극적으로는 두 조직 모두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Cunningham과 Taylor(1985)에 따르면, 경쟁이나 비협조는 오직 경찰의 태도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임으로[152]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태도변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법령이나 시행령 등의 공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겠지만, 다변화되고 민영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공무원 조직 전체를 놓고 볼 때, 경찰관만이 치안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상호 공생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148)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찰은 대체로 민간조사관에 대해 협력을 제공하는데 부정적이고, 반대로 민간조사관은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적극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kalik & Wildhorn, 1971). 따라서,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업무 협력은 전적으로 경찰과의 민간조사관에 대한 태도 변화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정책적이고 법률적인 제도의 마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unningham & Taylor, 1985).

149) Kakalik & Wildhorn. 앞의 논문.

150) Gill & Hart. 앞의 논문. (1997a).; Kakalik & Wildhorn. 앞의 논문.; Scott & McPherson. 앞의 논문.; 최무찬. 앞의 논문.

151) Scott & McPherson. 앞의 논문.

152) Cunningham & Taylor. 앞의 논문.

영국의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민간조사관의 80%가 전직경찰로 이루어져있다고 한다.[153] 이러한 경향은 민간조사관의 경찰 업무 협조에 상당한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지만, 반면에 선배 경찰이 민간조사관이 되고, 이들이 경찰의 조사/수사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경찰업무에 오히려 방해가 될 소지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Gill과 Hart (1997b)에 따르면, 전직 경찰이었던 민간조사관은 여전히 자신이 공권력을 소지한 경찰로 느끼며 경찰행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4] Cunningham과 Taylor(1985)에 따르면, 전직 경찰 출신인 민간조사관은 경찰과 텃밭다툼(turf war, 속된 표현으로 밥그릇 다툼)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155] 따라서 경찰에게 제공하는 민간조사관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기회는 퇴직 직전에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과정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전직 경찰 출신의 민간조사관이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사기업의 직원으로서 시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의식을 고취시켜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사회경찰제도(Community-oriented policing)라는 큰 경찰의 정책적 방향에 순응하는 것으로, 공공경찰력의 연장선으로 민간조사관이 치안망을 확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경찰정책의 방향에 발맞추도록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 치안공동생산론에 입각하여, 경찰 및 민간조사관 각각이 치안생산자로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자로 협력해야 함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156] 이러한 중점 교육 내용은 궁극적으로 경찰과 민간조사관 공히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정책제언은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정책의 기초가 현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정책제언이 한국의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와 나아가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보다나은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153) Gill, M., & Hart, J. (1999). Enforcing corporate security policy using private investigators.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7(2), 245-261.

154) Gill & Hart. 앞의 논문. (1997b).

155) Cunningham & Taylor. 앞의 논문.

156) 물론, 현실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사전단계 역할모델을 주지시켜, 전직 경찰 출신 민간조사관이 수사에 관여함으로써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I. 단행본

강영숙. 일본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pp.329-357, 2006.

김경태. 경찰과 민간경비의 비교 분석을 통한 민간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3), pp.245-267, 2004.

김양현, 경찰과 민간경비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 2007년.

나영민.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과 대응. 경찰학연구, 7(1), p.201.

박상진.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법,제도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 pp.218-307. 2007.

신의기. 보험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2007년, 18(3), 136-1396.

오세연/유영재.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자치도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 pp.89-112. 2009.

이상배. 민간조사제도의 정착 및 수사기관관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방지를 중심으로. 2006년 국회 정책연구보고.

이상원/이승철. 민간조사업 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9), pp.3-30, 2007.

이승철/방한복, 한국경찰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 2007년.

이재경.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 pp.115-143, 2009.

정웅.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9년. pp. 4~6.

조용철/박재풍. 민간조사업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 2009년.

조현빈,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2006년.

최선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 서울: 대왕사, 2002.

최정택, 경로분석을 통한 민간치안서비스 고객만족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14), 2009년.

한상철/정병수. 보험범죄 수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조사와 수사기관의 법,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9년.

황정익.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5년.

Ⅱ. 논문

나영민. 탐정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5.

안동현. 민간조사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7년.

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2008.

최무찬, 자치경찰시대의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6년.

Ⅲ. 기타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5935.html

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2

www.gwangnam.co.kr/news/news_view.htm?idxno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79686

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205240740571&code=910100

※ 일본 문헌

Ⅰ. 단행본

Yasuhiro Hanashi. 일본 탐정업법, 2006.

Ⅱ. 기타

Kunio Suzuki. Ensuring appropriate operations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2010.

※ 구미 문헌

Ⅰ. 단행본

Becker, T. (1974). The place of private police in society: An area of resaerch for the social sciences. Social Problems, 21(3), 438-453.

Carter, D. L., & Radelet, L. A. (1999).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6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Inc.

Chaiken, M., & Chaiken, J. (1987). Public Policing - Privately Provided.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Cunningham, W. C., & Taylor, T. H. (1985). The Hallcrest Report: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Portland, OR: Chancellor.

Frank, J. J., & Schwartz, B. M. (1996). Private eyes: Using investigators in criminal defense matters. Criminal Justice, 11, 21-28.

French, J. A. (1979).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 Threats or benefit to soceity? Police College Magazine, 15(2), 23-32.

Gill, M., & Hart, J. (1999). Enforcing corporate security policy using private investigators.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7(2), 245-261.

Gill, M., & Hart, J. (1997a). Exploring investigative policing: A study of private detectives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7(4), 549-567.

Gill, M., & Hart, J. (1997b). Policing as a business: The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private investigation. Policing and Society, 7, 117-141.

Gill, M., & Hart, J. (1997c). Private investigators in Britain and America: Perspectives on the impact of popular culture. Policing, 20(4), 631.

Gill, M., & Hart, J. (1999). Enforcing corporate security policy using private investigators.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7(2), 245-261.

Gill, M., Hart, J., Livingstone, k., & Stevens, J. (1996). The crime allocation system: Police investigations into burglary and auto crime. London: Home Office Police Research Group.

Gill, M., Hart, J., & Stevens, J. (1996). Private investigators: Under-researched, under-estimated and under-used? International Journal of Risk,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1(4), 305-314.

Kakalik, J. S., & Wildhorn, S. (1971). Private police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Santa Monica, CA: Rand.

Kakalik, J. S., & Wildhorn, S. (1972). Privat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Marling, W. (1995). The American Roman Noir: Hammet, Cain and Chandler.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Marx, G. T. (1987). The interweaving of public and private police in undercover work. In C. D. Shearing & P. C. Stenning (Eds.), Private Policing. Newbury Park, CA: Sage.

O'Connor, D., Lippert, R., Spencer, D., & Smylie, L. (2008). Seeing private security like a state. Crimonology and Criminal Justice, 8(2), 203-226.

Post, Richard S. (1971). Relations with private police services. The Police Chief, March.

Prenzler, T., & King, M. (2002). The role of private investigators and commercial agents in law enforcement (Vol.234).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Prenzler, T., & Sarre, R. (2008). Developing a risk profile and model regulatory system for the security industry. Security Journal, 21, 264-277.

Shearing, C. D., & Stenning, P. C. (1981). Modern private security: Its growth and implications. Crime and Justice, 3, 193-245.

Shearing, C. D., & Stenning, P. C. (1983). Private security: Implicationsfor social control. Social Problems, 30, 493-506.

Shearing, C. D. (1992). The rel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olicing. Crime and Justice, 15, 399-434.

Shearing, C. D., Stenning, P. C., & Addario, S. M. (1985). Police perceptions of private security. CAnadian Police College Journal, 9(2), 127-153.

Scott, T. M., & McPherson, M. (1971).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aw and Society Review, 6, 267-288.

Walsh, W. F. & Donovan, E. J. (1989). Private security and community policing: Evaluation and com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7, 187-197.

Weiss, R. P. (1986). Private detective agencies and labour discipline in the United States, 1855-1946. The Historical Journal, 29(1), 87-107.

Ⅱ. 기타

LEAA, Law enforcement and private security sources and areas of conflict and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Washington DC: U.S. 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 1977.

영 문 요 약

Chang-Hun Lee, Ph.D.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The main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develop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findings about anticipated effects of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on police activities in South Korea.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wo main areas of possible outcomes of the legalization; 1) changes in preference for public or private investigation among citizens, and 2) efficiency of police investigation regarding cooperation with private investigation.

Based on the co-production of policing theorem, the current study reviews and criticizes limitations in the literature on private policing and suggests that empirical evidence for the theorem is necessary for development of rigorous policies on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investigators.

Two separate surveys were administered between June and August 2010. 300 citizens and 400 police officers selected through nonprobability sampling (i.e., quota and purposive sampling) were ask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s, and 225 citizens and 377 police officers responded to the surveys. Survey items were developed based on prior studies,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focus group activities. Those items measured citizen's preference for private investigation, demographics, demand for personal justice, demand for self-centered investigation, attitudes toward police and private investigators. Also, the police survey measured officers' attitudes toward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ors, and cooperation with private investigation. Furthermore, officers' case-load for particular tasks, which were predefined works related to pre-police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hours spent for the tasks, number of cases in which private investigators involved, and anticipated saving times for officers when they could utilize private investigators for the cases.

Findings showed that almost half of the citizens were concerned about policing activities, and most of them were not very satisfied with police services. Citizens were attracted by the possibility that private investigation would be carried out to fulfill demands of clients (i.e., personal justice and self-centered investigation). However, citizens' responses suggested that they were concerned about private investigators' ability to carry out investigation and to protect personal privacy (i.e., confidentiality). Results from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suggested that citizen's demands for personal justice, self-centered investigation,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police servic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ir preference for private investigation.

Analyses of surveys from police officers showed that almost all police officers wanted cooperation with private investigators, but, in reality, they often do not cooperate with private investigators due to several factors, such as organizational climate and current illegality of private investigation. The most burdensome task was collecting evidence for fact-finding in civil cases, which consumed the biggest portion of officers' work hour. Analysis of anticipated saving time showed that on average one officer could save 17.8 hours per month if he could utilize private investigators for the task. Overall, analyses showed that on average one officer could save 8.5 hours per month in dealing with the predefined pre-police investigation tasks if he could use workforce of private investigators.

Based on the findings, the current study suggested two main policy implications; 1) pre-legalization policies and 2) post-legalization policies. The pre-legalization policies focus on enhancing citizen's satisfaction with police service through two approaches; 1)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officers (especially managerial officers) on service-oriented police activities, and 2) surveying needs and demands of citizens regarding crime problems. The post-legalization policies include 1) developing legal

policies on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investigators, and 2)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officers (especially those who are about to retire and to become private investigators) to change their attitudes toward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investigations.

〈부 록〉

1. 설문지: 시민 설문

민간조사관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선호도 조사

치안정책연구소 2010년 용역연구과제

안녕하십니까?

민간조사관은 현재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 합법적으로 미아찾기, 기업관련 사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개인의 권익 구현에 일조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전직 경찰관들이 민간조사업에 참여하여 형사사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정의를 위해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들어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이 입안되고 있고, 앞으로 민간조사관활동이 합법화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 요구에 따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민간조사관제도의 합법화와 그에 따른 민간조사관활동이 시민들의 경찰서비스 및 민간조사관 서비스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는 수집되지 않으며, 귀하의 답변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조사내용은 정부 통계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빠짐없는 답변이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 될 경찰활동 관련 정책제언의 수립과 향후 경찰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이며 성의 있게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7월

연구담당자: 이창훈 (미국 아칸소대학 범죄/형사정책학과 교수)
연 락 처: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Arkansas, Little Rock
2801 South University Ave.
Little Rock, AR 72204
1-501-366-1359
(Email: cxlee1@ualr.edu)

1. 다음 문항에 직접 기술하거나,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귀하의 성별 및 나이를 말씀해주십시오. 남자____ 여자____ 나이: 만_____세

주소지 경찰서명: _____

본인 주소: _____시(도) _____구(군) _____ 동(면,읍)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습니까? 미혼___ 기혼___ 이혼___ 사별___ 별거___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재학 및 중퇴 포함)
초등학교__중학교___고등학교___전문대(2년제)___대학교(4년제)___대학원이상___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_____ (설문 뒤쪽 직업분류표 참조)

귀댁의 월 평균 총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_____원

2.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개인 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나는 경찰활동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다.					
나는 여당을 지지하는 편이다.					
나의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나는 현재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남녀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내 의견은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변화나 의사 반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경찰활동에 있어서 내 말을 경청하고 내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언제나 같은 경찰관이 순찰활동을 한다.					
나는 현 경찰 청장이 누구인지 안다.					
나는 지역 경찰 서장이 누구인지 안다.					
나는 대체로 비판적으로 사물을 보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나는 의심이 많은 편이다.					
경찰은 지역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른다.					
민간조사원은 내가 원하는 데로 수사를 해 줄 것이다.					
민간조사원은 경찰보다 내 의사를 존중할 것이다.					
민간조사원은 나를 위해 일 할 것이다.					
민간조사원은 경찰보다 수사력이 뛰어날 것이다.					
민간조사원은 고용인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할 것이다.					
민간조사원은 경찰보다 정보력이 뛰어날 것이다.					
민간조사원은 경찰보다 도덕적이고 깨끗할 것이다.					
민간조사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것이다.					
민간조사원(흥신소/심부름센터)을 고용한 경험이 있다.					
민간조사원을 만족스럽게 이용한 경험이 있다.					
민간조사원은 내가 예상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민간조사관제도는 개인적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민간조사관제도는 합법화 되어야 한다.					

3. 다음은 문항들은 귀하의 경찰과 관련된 경험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경찰과 접촉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으로 경찰에 대해 느끼시는 데로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내가 사는 지역은 경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출동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비리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사회문제에 무관심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교통관리를 잘 못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매춘 등 성범죄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권위적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과는 대화가 잘 안 통한다.					
내가 사는 지역 경찰은 티켓(교통위반 등)을 남용한다.					
경찰의 행정처리가 너무나 답답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들은 조직폭력배 문제에 무능하게					

대처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들은 복장이 불량하다.					
내가 사는 지역 경찰들은 무력을 남용한다.					
내가 사는 지역에선 순찰활동이 눈이 띄지 않는다.					
내가 사는 지역에선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범죄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과 경찰은 좋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지역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선 경찰(관, 순찰차) 보기가 쉽지 않다.					
내가 사는 지역에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즉각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한다.					
내가 사건/사고를 신고하여 경찰과 만난 적이 있다.					
경찰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경찰이 사건/사고를 수사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친절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공정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정직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시민을 편안히 대해준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공손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시민을 잘 보호해 준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직업의식이 투철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범죄를 잘 해결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범죄를 잘 예방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비리가 없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 행정 절차는 적절한 편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시민의 만족에 민감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한다.					
티켓(교통 등)을 받은 적이 있다.					
내가 받은 교통 위반 티겟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 홍보, 교육 등의 활동을 많이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지역사회 문제에 민감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지역민의 안전을 정말로 걱정해 준다.					
평소 경찰관과 가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					
사건/사고를 경찰에 신고해 본 경험이 있다.					
경찰에 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은 내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충실히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4. 아래의 문항들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내가 사는 지역은 주거침입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사는 지역은 강도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사는 지역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사는 지역은 부랑자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사는 지역은 강력범죄가 심각하다.					
내가 사는 지역은 기물파손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사는 지역은 강간 등 성폭행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사는 지역은 청소년 비행 문제가 심각하다.					
나는 폭력, 성폭행/추행 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나는 절도, 강도 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나는 기타 (컴퓨터 사기 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무섭다.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무섭다.					
내가 사는 지역을 좋아한다.					
현재 내가 사는 곳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다.					
지역 주민들은 경찰과 협조하여 일한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존재하는 비행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하려한다.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적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버려지거나 관리가 잘 안되는 집이나 건물들이 많은 편이다.					
내가 사는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다.					
내가 사는 지역은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내가 사는 지역은 범죄율이 높은 편이다.					
내 주변에 범죄 피해자가 많은 편이다.					

5. 아래의 질문들은 귀하께서 경찰과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나는 전반적으로 경찰활동에 만족한다.					
나는 경찰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노력에 만족한다.					
나는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찰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조사원보다는 경찰에게 사건을 의뢰 하는 게 낫다.					

나는 경찰의 범죄피해 대처에 만족한다.					
나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만족한다.					
나는 경찰의 범인 검거 (범죄해결) 능력에 만족한다.					
나는 경찰의 현 치안서비스에 만족한다.					

6. 만약 귀하께서 아래의 사건/사고에 연루 되었을 때, 민간조사관을 고용 하겠습니까?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뺑소니 사고 피해 발생시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 발생시					
회사나 가게 등 자영업장 내 범죄문제 발생시					
자동차나 귀중품 등 분실 피해 발생시					
사기 등 피해를 당했을 때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미술품, 도자기 등 예술 작품을 도난당했을 때					
가족 등 친인척이나 친구가 실종되었을 때					
신입사원 채용 시					
결혼이나 계약 등을 위해 신원조사가 필요할 때					
불륜 문제 발생시					
사생활 침해를 당했을 때					
민사사건 발생 시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 자문을 구하겠다.					

7. 귀하는 다음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다수 선택 가능)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경찰	민간조사관	변호사
뺑소니 사고 피해 발생시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 발생시			
회사나 가게 등 자영업장 내 범죄문제 발생시			
자동차나 귀중품 등 분실 피해 발생시			
사기 등 피해를 당했을 때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미술품, 도자기 등 예술 작품을 도난당했을 때			
가족 등 친인척이나 친구가 실종되었을 때			
신입사원 채용 시			
결혼이나 계약 등을 위해 신원조사가 필요할 때			
불륜 문제 발생시			
사생활 침해를 당했을 때			

********** 설문에 참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

〈직업 분류표〉

전문직	11: 의사 12: 약사 13: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14: 대학교수 15: 작가, 예술가 16: 언론인, 방송인 17: 종교인 18: 기타 전문직 (무엇:)
관리직	21: 중소기업체 사장 22: 대기업, 은행간부 (부장 이상) 23: 고급공무원(4급서기관 이상) 24: 사회단체 간부(부장 이상) 25: 군인(영관급 이상), 경찰 (경정 이상) 26: 기타 관리직
반전문기술직	31: 교사, 학원강사 32: 간호사 33: 건축사 34: 엔지니어 35: 연구원 35: 기타 기술직
사무직	41: 중간관리직 회사원(차장, 과장) 42: 일반사무직 회사원(계장, 대리, 평사원) 43: 중간관리직 은행원(차장, 과장) 44: 일반사무직 은행원(대리, 행원) 45: 사회단체 직원(과장급 이하) 46: 일반공무원(5급 사무관 이하) 47: 전화교환수, 집배원 48: 군인(위관급, 하사관), 경찰 (경감 이하) 49: 기타 사무직
판매직	51: 도,소매 상점주인 52: 백화점, 대규모 유통업체 직원 53: 소규모 상점 점원 54: 외판원 55: 부동산 중개인 56: 행상, 노점상 57: 기타 판매직
서비스직	61: 음식점, 여관 등 주인 62: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63: 이,미용실, 세탁소 주인 64: 이,미용실, 세탁소 종업원 65: 청소부, 파출부 66: 수위, 경비원 67: 기타 서비스직
생산직	71: 생산감독(주임, 반장) 72: 공장 근로자(숙련공, 기능공) 73: 공장근로자(반숙련공) 74: 공장근로자(견습공, 비숙련공) 75: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76: 고용 운전사(자동차, 중장비) 77: 개인택시, 화물차 운전사 78: 광원 79: 기타 생산직

농어민	81: 부농(2정보=6000평 이상) 82: 중농(1-2정보=3000~5999 평) 83: 소농(0.5~1정보=1500~2999평) 84: 빈농,소작농(0.5정보=1500평 미만) 85: 농업노동자, 품일꾼 86: 축산, 낙농업자 87: 선주 88: 어부, 수산, 양식업자 89: 기타 농어민
미취업	91: 학생 92: 주부 93: 의무복무 군인(사병, 전경) 94:무직(실업자) 95: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96: 기타

2. 설문지: 경찰 설문

민간조사관 제도 시행에 따른 경찰활동 영향조사

치안정책연구소 2010년 용역연구과제

안녕하십니까?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민간조사관 제도의 합법화와 그에 따른 민간조사관활동이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하여 민간조사관활동의 양성화에 뒤따르는 경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조사관은 현재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 합법적으로 미아찾기, 기업관련 사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개인의 권익 구현에 일조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전직 경찰관들이 민간조사업에 참여하여 형사사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정의를 위해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들어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이 입안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조사관활동이 합법화 될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 민간조사관제도의 합법화가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앞으로 경찰과 민간조사관 사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기적 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직 경찰이신 귀하의 의견은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나아가 민간조사관제도의 정책수립과 실행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빠짐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는 수집되지 않으며, 귀하의 답변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조사내용은 정부 통계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빠짐없는 답변이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 될 경찰활동 관련 정책제언의 수립과 향후 경찰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이며 성의 있게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6월

연구담당자: 이창훈(미국 아칸소대학 범죄/형사정책학과 교수)
연 락 처: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Arkansas, Little Rock
2801 South University Ave.
Little Rock, AR 72204
1-501-366-1359
(Email: cxlee1@ualr.edu)

1. 다음 문항에 직접 기술하거나,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귀하의 성별 및 나이를 말씀해주십시오. 남자____ 여자____ 나이: 만_____세

경찰서명: _____ 경찰서 (주소: _____시(도) _____구(군))

담당 부서: _____ 담당 직책: _____

현재계급:순경___ 경장___ 경사___ 경위___ 경감___ 경정___ 총경___ 경무관___

경찰이 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 년_____개월
현 보직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습니까? 미혼___ 기혼___ 이혼____ 사별____ 별거____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재학 및 중퇴 포함)
초등학교__ 중학교__ 고등학교__ 전문대(2년제)__대학교(4년제)___대학원이상___

2. 아래의 문항들은 귀하가 민간조사관제도에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시 해당 항목에 따라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에 예상되는 의견을 성실히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경험에 비춰보면 앞으로 시행될 민간조사관 활동은 내 업무(경찰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험에 비춰보면 앞으로 시행될 민간조사관 활동은 경찰활동 전반에 방해만 될 것이다.					
민간조사관 활동은 치안서비스(범죄예방) 공백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조사관 활동은 내 업무량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민간조사관들은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민간조사관 활동은 경찰의 범죄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조사관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한다.					
민간조사관은 소비자(의뢰자)의 이득보다 자신의 이득을 목표로 한다.					
민간조사관들은 경찰에 비해 자질이 부족 할 것이다.					
경찰활동에 있어서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내 업무량을 늘이기만 할 것이다.					
나는 가급적이면 민간조사관들과의 접촉이나 업무 협조를 피하려 한다.					

민간조사관(현재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혹은 탐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단체 등)들은 사건해결과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민간조사관은 사생활보호에 관심이 없다.					
민간조사관 활동은 현행처럼 불법행위로 규정 되어야 한다.					
민간조사관들은 경찰보다 나은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도 있다.					
민간조사관들은 경찰에게서 정보를 가져가려고만 할 것이다.					
경찰은 민간조사관들과 협력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나는 일반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민간조사관의 요청이 있을시 업무상 협조를 할 것이다.					
민간조사관들은 이윤추구에 급급하다.					
민간조사관들과 업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시 민간조사관들과 수사 경쟁을 하기보다는 정보공유를 통한 공조수사를 할 것이다.					
관내에서는 민간조사관들과의 협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관내에는 민간조사관과의 협조를 규제하는 정책이 있다.					
상사들은 민간조사관과의 수사협조를 싫어한다.					
민간조사관들은 경찰과의 적극적 공조를 원한다.					
경험에 의하면 민간조사관의 수사협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간조사관은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민간조사관의 도움으로 사건해결이 쉬웠던 경험이 있다.					
민간조사관들은 경찰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려 한다.					
미제사건은 민간조사관에 의뢰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더 효율적일 것이다.					
경제, 컴퓨터 등 관련 사건은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조사관에게 의뢰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인적사항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민간조사관 고용이 더 바람직하다.					
실종, 행불자 등의 조사는 민간조사관 활용이 바람직하다.					
목격자나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들은 민간조사관을 활용하여 수사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불륜이나 개인적 채권추심 등 민사사건은 민간조사관 고용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 사건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 낫다.					
유명 인사나 기업이 연루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거/목격자 등이 불충분한 사건은 민간조사관을 고용하여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3. 현재 홍신소나 심부름센터의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다소 음성적인 방법으로 경찰과의 업무상 접촉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문항들은 귀하께서 경험하신 민간조사관들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협조형식은 문서=A, 구두=B, 혹은 둘 다=C를 기입해 주시고, 실무종사시 평균적으로 민간조사관들과 얼마나 자주 다음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 민간조사관 관련 법안의 입안과 시행에 필요한 현황파악이 이루어 질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협조형식 문서=A 구두=B 둘 다=C	협조 안함	월1-4회	월 5-10회	월11-20회	거의 매일
사이버범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침해, 기업 회계 부정 등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 훼손 등 각종사고의 원인 및 책임(고의입증 등)의 조사						
행방불명자, 미아, 소재 불명 친인척,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의 소재파악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						
개인 정보 중 사생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조사 (신원조회 등)						

4. 다음 문항들은 귀하께서 수행하는 업무와 업무소비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시간을 기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계신 분은 교육과정 입교 전을 기준으로). 본 문항들에 대한 답변은 민간조사관제도가 합법화 될 경우, 민간조사관이 귀하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수임을 숙지하시고 가급적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전단계 업무내용	담당 관련 사건수	월평균 소비 시간	민간조사관이 관련된 사건 수	민간조사관 협조시예상 절약 시간
민사사건(고소 등)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자료 수집 활동 (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 훼손 등 각종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건	시간	건	시간
행방불명자, 미아, 소재 불명친인척,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활동	건	시간	건	시간
재산 도피 관계 및 소재 확인 활동	건	시간	건	시간
고의입증 조사 활동	건	시간	건	시간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활동	건	시간	건	시간
가출인 정보 확인 활동	건	시간	건	시간
탐문조사활동(정보수집, 정리, 확인)	건	시간	건	시간
기존 실종자 정보(미해결 실종자 사건) 조사 활동	건	시간	건	시간
신원 확인 활동	건	시간	건	시간
행적/주소지 파악 등의 활동	건	시간	건	시간
여타 기관(공공/사립 등) 확인활동	건	시간	건	시간
CCTV 등 확인활동	건	시간	건	시간
불륜 등 사건 조사 활동	건	시간	건	시간
이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활동이 있으면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건	시간	건	시간
_____	건	시간	건	시간
_____	건	시간	건	시간

————————————	건	시간	건	시간

5. 아래 주어진 각 상황에서 귀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실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 중소기업의 회계부정과 관련한 첩보가 입수 되었다. 신고자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지만, 증거자료가 복잡한 회계 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에 소비할 여력(인원)이 부족하다.					
민간조사관들이 이런 사건 수사에 필요한 더 나은 장비/기술력을 갖고 있다.					
민간조사관들이 이 사건 수사에 법적 제약을 덜 받는다.					
신고자에게 민간조사관을 소개해 주겠다.					
민간조사관의 협조 요청 시 적극 공조수사를 하겠다.					
민간조사관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경찰수사의 시간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이 제공하는 목격자 및 증거에 대한 정보가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과의 협조는 사건 해결율을 높여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관여는 업무만 가중시킨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참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한 민간조사관 참여를 꺼려한다.					
이 사건은 정책상 민간조사관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한 중소기업의 기업정보 유출과 관련한 첩보가 입수 되었다. 신고자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지만,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추가 내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에 소비할 여력(인원)이 부족하다.					
민간조사관들이 이런 사건 수사에 필요한 더 나은					

장비/기술력을 갖고 있다.					
민간조사관들이 이 사건 수사에 법적 제약을 덜 받는다.					
신고자에게 민간조사관을 소개해 주겠다.					
민간조사관의 협조 요청 시 적극 공조수사를 하겠다.					
민간조사관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경찰수사의 시간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이 제공하는 목격자 및 증거에 대한 정보가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과의 협조는 사건 해결율을 높여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관여는 업무만 가중시킨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참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한 민간조사관 참여를 꺼려한다.					
이 사건은 정책상 민간조사관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 되었지만, 피해자의 친인척이 민간조사관을 고용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사하고 소재파악을 의뢰 하였고, 민간조사관이 경찰의 사건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하였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에 소비할 여력(인원)이 부족하다.					
민간조사관들이 이런 사건 수사에 필요한 더 나은 장비/기술력을 갖고 있다.					
민간조사관들이 이 사건 수사에 법적 제약을 덜 받는다.					
신고자에게 민간조사관을 소개해 주겠다.					
민간조사관의 협조 요청 시 적극 공조수사를 하겠다.					
민간조사관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경찰수사의 시간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이 제공하는 목격자 및 증거에 대한 정보가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과의 협조는 사건 해결율을 높여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관여는 업무만 가중시킨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참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한 민간조사관 참여를 꺼려한다.					
이 사건은 정책상 민간조사관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당 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 실종자는 15세 여학생으로 실종과 관련한 증거가 매우 부족할 실정이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에 소비할 여력(인원)이 부족하다.					
민간조사관들이 이런 사건 수사에 필요한 더 나은 장비/기술력을 갖고 있다.					
민간조사관들이 이 사건 수사에 법적 제약을 덜 받는다.					
신고자에게 민간조사관을 소개해 주겠다.					
민간조사관의 협조 요청 시 적극 공조수사를 하겠다.					
민간조사관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경찰수사의 시간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이 제공하는 목격자 및 증거에 대한 정보가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과의 협조는 사건 해결율을 높여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관여는 업무만 가중시킨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참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한 민간조사관 참여를 꺼려한다.					
이 사건은 정책상 민간조사관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당 경찰서에 불륜과 관련된 수사의뢰가 접수되었다. 고소인은 경찰이 동행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에 소비할 여력(인원)이 부족하다.					
민간조사관들이 이런 사건 수사에 필요한 더 나은 장비/기술력을 갖고 있다.					
민간조사관들이 이 사건 수사에 법적 제약을 덜 받는다.					
신고자에게 민간조사관을 소개해 주겠다.					
민간조사관의 협조 요청 시 적극 공조수사를 하겠다.					
민간조사관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경찰수사의 시간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이 제공하는 목격자 및 증거에 대한 정보가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과의 협조는 사건 해결율을 높여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관여는 업무만 가중시킨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참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한 민간조사관 참여를 꺼려한다.					
이 사건은 정책상 민간조사관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한 미성년 여학생이 강간을 당하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인적사항 노출을 우려하여 경찰수사를 꺼려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민간조사관의 고용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에 소비할 여력(인원)이 부족하다.					
민간조사관들이 이런 사건 수사에 필요한 더 나은 장비/기술력을 갖고 있다.					
민간조사관들이 이 사건 수사에 법적 제약을 덜 받는다.					
신고자에게 민간조사관을 소개해 주겠다.					
민간조사관의 협조 요청 시 적극 공조수사를 하겠다.					
민간조사관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경찰수사의 시간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이 제공하는 목격자 및 증거에 대한 정보가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과의 협조는 사건 해결율을 높여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관여는 업무만 가중시킨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참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한 민간조사관 참여를 꺼려한다.					
이 사건은 정책상 민간조사관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에 소비할 여력(인원)이 부족하다.					
민간조사관들이 이런 사건 수사에 필요한 더 나은 장비/기술력을 갖고 있다.					
민간조사관들이 이 사건 수사에 법적 제약을 덜 받는다.					
신고자에게 민간조사관을 소개해 주겠다.					

민간조사관의 협조 요청 시 적극 공조수사를 하겠다.					
민간조사관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경찰수사의 시간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이 제공하는 목격자 및 증거에 대한 정보가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과의 협조는 사건 해결율을 높여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관여는 업무만 가중시킨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참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한 민간조사관 참여를 꺼려한다.					
이 사건은 정책상 민간조사관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국내 유수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었다. 신문사 및 방송국 기자들이 사건을 눈치 채고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문의해 오고 있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에 소비할 여력(인원)이 부족하다.					
민간조사관들이 이런 사건 수사에 필요한 더 나은 장비/기술력을 갖고 있다.					
민간조사관들이 이 사건 수사에 법적 제약을 덜 받는다.					
신고자에게 민간조사관을 소개해 주겠다.					
민간조사관의 협조 요청 시 적극 공조수사를 하겠다.					
민간조사관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경찰수사의 시간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이 제공하는 목격자 및 증거에 대한 정보가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과의 협조는 사건 해결율을 높여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관여는 업무만 가중시킨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참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한 민간조사관 참여를 꺼려한다.					
이 사건은 정책상 민간조사관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5년 전 발생한 강간 및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상황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속적인 경찰수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며 초동수사에서 목격자를 찾을 수가 없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해당사항에 ○ 혹은 ✓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이런 사건 수사에 소비할 여력(인원)이 부족하다.					
민간조사관들이 이런 사건 수사에 필요한 더 나은 장비/기술력을 갖고 있다.					
민간조사관들이 이 사건 수사에 법적 제약을 덜 받는다.					
신고자에게 민간조사관을 소개해 주겠다.					
민간조사관의 협조 요청 시 적극 공조수사를 하겠다.					
민간조사관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활용은 경찰수사의 시간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이 제공하는 목격자 및 증거에 대한 정보가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과의 협조는 사건 해결율을 높여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관여는 업무만 가중시킨다.					
이 사건에서 민간조사관의 참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한 민간조사관 참여를 꺼려한다.					
이 사건은 정책상 민간조사관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治安論叢 (제27집)

2011년 8월 발행
2011년 8월 인쇄

발행인 : 김 영 식
발행처 : 치 안 정 책 연 구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인쇄처 : 제 이 케 이 컴 퍼 니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27집 치안논총 2011 Police Science Journal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Tel. 031-285-0183 Fax. 031-285-0184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